

#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4.20.(목)]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곧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아파트(후분양제 주택)**으로 마이너스옵션제(실내외감공사를 계약자 등 입주자가 직접 선택하여 시공)는 실시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계약자는 사업주체에 마이너스옵션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후분양제 주택으로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각 세대에 시공할(한) 기본옵션, 발코니확장 등 모든 건축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시공방법을 사업주체에 요구하거나,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4.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4.20.(목)]** 입니다.(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용인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멸기간 이내에 소멸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4.20.(목)]**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인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04.20.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 등']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 재공급	○	○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lif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03.3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본 공급(분양)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관련서류의 제출 등 사업주체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신고를 거부하거나 사업주체의 요청사항에 협조하지 않아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해도 계약자가 전부 배상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6억 초과 주택형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법인 주택 거래 계약서를 의무 제출하여야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택법 제64조, 동 시행령 제73조, [별표3]	6개월	6개월

- ※ 본 아파트의 전매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어떠한 보장(전매주선보장, 전매수익보장 등)이나 약속을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b>5월 2일(화)</b>	<b>5월 3일(수)</b>	<b>5월 4일(목)</b>	<b>5월 11일(목)</b>	<b>5월 22일(월) ~ 5월 24일(수)</b>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주택전시관</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당사 주택전시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전시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용인시 주택과 **6165(2023.04.2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55-3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32층 12개동 총 9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514세대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04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104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81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33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9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 면적	지하 주차장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 공급 세대 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139	01	059.8090A	59A	59.8090	21.4387	81.2477	6.0701	32.1095	119.4273	32.8469	105	11	11	19	4	10	55	50	9
		02	059.9257B	59B	59.9257	22.7096	82.6353	6.0822	32.1722	120.8897	32.9111	21	3	3	4	1	2	13	8	2
		03	059.9774C	59C	59.9774	21.2072	81.1846	6.0875	32.2002	119.4723	32.9395	3	-	-	-	-	-	-	3	-
		04	074.9589	74	74.9589	26.0726	101.0315	7.6078	40.2432	148.8825	41.1674	152	16	16	28	5	14	79	73	6
		05	084.9954A	84A	84.9954	29.3869	114.3823	8.6267	45.6314	168.6404	46.6795	461	47	47	83	14	42	233	228	20
		06	084.8903B	84B	84.8903	29.1463	114.0366	8.6157	45.5749	168.2272	46.6217	97	10	10	18	3	9	50	47	4
		07	084.6756C	84C	84.6756	29.5174	114.1930	8.5940	45.4597	168.2467	46.5038	135	14	14	25	5	13	71	64	5
		08	084.7796D	84D	84.7796	29.1687	113.9483	8.6045	45.5155	168.0683	46.5610	21	3	3	4	1	2	13	8	1
		09	084.8945E	84E	84.8945	28.7940	113.6885	8.6162	45.5773	167.8820	46.6240	2	-	-	-	-	-	-	2	-
		10	084.8148F	84F	84.8148	29.0257	113.8405	8.6081	45.5345	167.9831	46.5802	2	-	-	-	-	-	-	2	-
합 계												999	104	104	181	33	92	514	485	47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 주택형	059.8090A	059.9257B	059.9774C	074.9589	084.9954A	084.8903B	084.6756C	084.7796D	084.8945E	084.8148F
약식 표기	59A	59B	59C	74	84A	84B	84C	84D	84E	84F

▣ 분양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천원)

타입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 별 (라인)	층	동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총분양가	계약 시	1회(30%) (2023.08.10)	2회(30%) (2023.11.10)	입주지정일
59A	105	104동(3, 5)	1	104-103	255,850	475,150	731,000	73,100	219,300	219,300	219,300
			2	104-203	262,850	488,150	751,000	75,100	225,300	225,300	225,300
			2	104-205	245,350	455,650	701,000	70,100	210,300	210,300	210,300
			3	104-303	266,350	494,650	761,000	76,100	228,300	228,300	228,300
			3	104-305	248,850	462,150	711,000	71,100	213,300	213,300	213,300
			4	104-403	267,400	496,600	764,000	76,400	229,200	229,200	229,200
			4	104-405	249,900	464,100	714,000	71,400	214,200	214,200	214,200
			5	104-503	268,450	498,550	767,000	76,700	230,100	230,100	230,100
			5	104-505	250,950	466,050	717,000	71,700	215,100	215,100	215,100
			6	104-603	269,500	500,500	770,000	77,000	231,000	231,000	231,000
			6	104-605	252,000	468,000	720,000	72,000	216,000	216,000	216,000
			7	104-703	270,550	502,450	773,000	77,300	231,900	231,900	231,900
			7	104-705	253,050	469,950	723,000	72,300	216,900	216,900	216,900
		8	104-803	271,600	504,400	776,000	77,600	232,800	232,800	232,800	
		8	104-805	254,100	471,900	726,000	72,600	217,800	217,800	217,800	
		9	104-903	272,650	506,350	779,000	77,900	233,700	233,700	233,700	
		9	104-905	255,150	473,850	729,000	72,900	218,700	218,700	218,700	
		10	104-1003	273,700	508,300	782,000	78,200	234,600	234,600	234,600	
		10	104-1005	256,200	475,800	732,000	73,200	219,600	219,600	219,600	
		11	104-1103	274,750	510,250	785,000	78,500	235,500	235,500	235,500	
		11	104-1105	257,250	477,750	735,000	73,500	220,500	220,500	220,500	
		12	104-1203	275,800	512,200	788,000	78,800	236,400	236,400	236,400	
		13	104-1303	276,850	514,150	791,000	79,100	237,300	237,300	237,300	
		107동(1, 2)	1	107-101	213,850	397,150	611,000	61,100	183,300	183,300	183,300
			1	107-102	220,850	410,150	631,000	63,100	189,300	189,300	189,300
			2	107-201	220,850	410,150	631,000	63,100	189,300	189,300	189,300
2	107-202		227,850	423,150	651,000	65,100	195,300	195,300	195,300		
3	107-301		224,350	416,650	641,000	64,100	192,300	192,300	192,300		
3	107-302		231,350	429,650	661,000	66,100	198,300	198,300	198,300		
4	107-401		225,400	418,600	644,000	64,400	193,200	193,200	193,200		
4	107-402		232,400	431,600	664,000	66,400	199,200	199,200	199,200		
5	107-501		226,450	420,550	647,000	64,700	194,100	194,100	194,100		

		5	107-502	233,450	433,550	667,000	66,700	200,100	200,100	200,100
		6	107-601	227,500	422,500	650,000	65,000	195,000	195,000	195,000
		6	107-602	234,500	435,500	670,000	67,000	201,000	201,000	201,000
		7	107-702	235,550	437,450	673,000	67,300	201,900	201,900	201,900
		8	107-802	236,600	439,400	676,000	67,600	202,800	202,800	202,800
		9	107-902	237,650	441,350	679,000	67,900	203,700	203,700	203,700
		10	107-1002	238,700	443,300	682,000	68,200	204,600	204,600	204,600
		11	107-1102	239,750	445,250	685,000	68,500	205,500	205,500	205,500
		12	107-1202	240,800	447,200	688,000	68,800	206,400	206,400	206,400
		13	107-1302	241,850	449,150	691,000	69,100	207,300	207,300	207,300
		14	107-1402	242,900	451,100	694,000	69,400	208,200	208,200	208,200
		15	107-1502	261,450	485,550	747,000	74,700	224,100	224,100	224,100
		16	107-1602	273,000	507,000	780,000	78,000	234,000	234,000	234,000
	108동(1, 2)	1	108-101	248,850	462,150	711,000	71,100	213,300	213,300	213,300
		1	108-102	255,850	475,150	731,000	73,100	219,300	219,300	219,300
		2	108-201	255,850	475,150	731,000	73,100	219,300	219,300	219,300
		2	108-202	262,850	488,150	751,000	75,100	225,300	225,300	225,300
		3	108-301	259,350	481,650	741,000	74,100	222,300	222,300	222,300
		3	108-302	266,350	494,650	761,000	76,100	228,300	228,300	228,300
		4	108-401	260,400	483,600	744,000	74,400	223,200	223,200	223,200
		4	108-402	267,400	496,600	764,000	76,400	229,200	229,200	229,200
		5	108-501	261,450	485,550	747,000	74,700	224,100	224,100	224,100
		5	108-502	268,450	498,550	767,000	76,700	230,100	230,100	230,100
		6	108-601	262,500	487,500	750,000	75,000	225,000	225,000	225,000
		6	108-602	269,500	500,500	770,000	77,000	231,000	231,000	231,000
		7	108-701	263,550	489,450	753,000	75,300	225,900	225,900	225,900
		7	108-702	270,550	502,450	773,000	77,300	231,900	231,900	231,900
		8	108-801	264,600	491,400	756,000	75,600	226,800	226,800	226,800
		8	108-802	271,600	504,400	776,000	77,600	232,800	232,800	232,800
		9	108-901	265,650	493,350	759,000	75,900	227,700	227,700	227,700
		9	108-902	272,650	506,350	779,000	77,900	233,700	233,700	233,700
		10	108-1001	266,700	495,300	762,000	76,200	228,600	228,600	228,600
		10	108-1002	273,700	508,300	782,000	78,200	234,600	234,600	234,600
	11	108-1101	267,750	497,250	765,000	76,500	229,500	229,500	229,500	
	11	108-1102	274,750	510,250	785,000	78,500	235,500	235,500	235,500	

		12	108-1201	268,800	499,200	768,000	76,800	230,400	230,400	230,400
		12	108-1202	275,800	512,200	788,000	78,800	236,400	236,400	236,400
		13	108-1301	269,850	501,150	771,000	77,100	231,300	231,300	231,300
		13	108-1302	276,850	514,150	791,000	79,100	237,300	237,300	237,300
		14	108-1401	270,900	503,100	774,000	77,400	232,200	232,200	232,200
		14	108-1402	277,900	516,100	794,000	79,400	238,200	238,200	238,200
		15	108-1501	271,950	505,050	777,000	77,700	233,100	233,100	233,100
		15	108-1502	278,950	518,050	797,000	79,700	239,100	239,100	239,100
		16	108-1602	280,000	520,000	800,000	80,000	240,000	240,000	240,000
		17	108-1702	281,050	521,950	803,000	80,300	240,900	240,900	240,900
		18	108-1802	282,100	523,900	806,000	80,600	241,800	241,800	241,800
		19	108-1902	283,150	525,850	809,000	80,900	242,700	242,700	242,700
	109동(2, 3, 4)	1	109-102	241,850	449,150	691,000	69,100	207,300	207,300	207,300
		1	109-103	241,850	449,150	691,000	69,100	207,300	207,300	207,300
		1	109-104	241,850	449,150	691,000	69,100	207,300	207,300	207,300
		2	109-202	248,850	462,150	711,000	71,100	213,300	213,300	213,300
		2	109-203	248,850	462,150	711,000	71,100	213,300	213,300	213,300
		2	109-204	248,850	462,150	711,000	71,100	213,300	213,300	213,300
		3	109-302	252,350	468,650	721,000	72,100	216,300	216,300	216,300
		3	109-303	252,350	468,650	721,000	72,100	216,300	216,300	216,300
		3	109-304	252,350	468,650	721,000	72,100	216,300	216,300	216,300
		4	109-402	253,400	470,600	724,000	72,400	217,200	217,200	217,200
		4	109-403	253,400	470,600	724,000	72,400	217,200	217,200	217,200
		4	109-404	253,400	470,600	724,000	72,400	217,200	217,200	217,200
		5	109-502	254,450	472,550	727,000	72,700	218,100	218,100	218,100
		5	109-503	254,450	472,550	727,000	72,700	218,100	218,100	218,100
		5	109-504	254,450	472,550	727,000	72,700	218,100	218,100	218,100
		6	109-602	255,500	474,500	730,000	73,000	219,000	219,000	219,000
		6	109-603	255,500	474,500	730,000	73,000	219,000	219,000	219,000
		6	109-604	255,500	474,500	730,000	73,000	219,000	219,000	219,000
		7	109-702	256,550	476,450	733,000	73,300	219,900	219,900	219,900
		7	109-703	256,550	476,450	733,000	73,300	219,900	219,900	219,900
	7	109-704	256,550	476,450	733,000	73,300	219,900	219,900	219,900	
	8	109-802	257,600	478,400	736,000	73,600	220,800	220,800	220,800	

		110동(3)	2	110-203	351,400	652,600	1,004,000	100,400	301,200	301,200	301,200		
		111동(1, 2)	2	111-201	299,950	557,050	857,000	85,700	257,100	257,100	257,100		
			2	111-202	306,950	570,050	877,000	87,700	263,100	263,100	263,100		
		112동(2)	2	112-202	271,950	505,050	777,000	77,700	233,100	233,100	233,100		
59B	21	104동(4)	1	104-104	247,100	458,900	706,000	70,600	211,800	211,800	211,800		
			2	104-204	254,100	471,900	726,000	72,600	217,800	217,800	217,800		
			3	104-304	257,600	478,400	736,000	73,600	220,800	220,800	220,800		
			4	104-404	258,650	480,350	739,000	73,900	221,700	221,700	221,700		
			5	104-504	259,700	482,300	742,000	74,200	222,600	222,600	222,600		
			6	104-604	260,750	484,250	745,000	74,500	223,500	223,500	223,500		
			7	104-704	261,800	486,200	748,000	74,800	224,400	224,400	224,400		
			8	104-804	262,850	488,150	751,000	75,100	225,300	225,300	225,300		
			9	104-904	263,900	490,100	754,000	75,400	226,200	226,200	226,200		
			10	104-1004	264,950	492,050	757,000	75,700	227,100	227,100	227,100		
			11	104-1104	266,000	494,000	760,000	76,000	228,000	228,000	228,000		
			12	104-1204	267,050	495,950	763,000	76,300	228,900	228,900	228,900		
			13	104-1304	268,100	497,900	766,000	76,600	229,800	229,800	229,800		
			14	104-1404	269,150	499,850	769,000	76,900	230,700	230,700	230,700		
				109동(1)	2	109-201	236,600	439,400	676,000	67,600	202,800	202,800	202,800
					3	109-301	240,100	445,900	686,000	68,600	205,800	205,800	205,800
					4	109-401	241,150	447,850	689,000	68,900	206,700	206,700	206,700
					5	109-501	242,200	449,800	692,000	69,200	207,600	207,600	207,600
					6	109-601	243,250	451,750	695,000	69,500	208,500	208,500	208,500
			7	109-701	244,300	453,700	698,000	69,800	209,400	209,400	209,400		
			8	109-801	245,350	455,650	701,000	70,100	210,300	210,300	210,300		
59C	3	111동(1, 2)	1	111-101	273,000	507,000	780,000	78,000	234,000	234,000	234,000		
			1	111-102	280,000	520,000	800,000	80,000	240,000	240,000	240,000		
		112동(2)	1	112-102	245,000	455,000	700,000	70,000	210,000	210,000	210,000		
74	152	101동(4, 5)	1	101-104	289,800	538,200	828,000	82,800	248,400	248,400	248,400		
			1	101-105	282,800	525,200	808,000	80,800	242,400	242,400	242,400		
			2	101-204	307,300	570,700	878,000	87,800	263,400	263,400	263,400		
			2	101-205	300,300	557,700	858,000	85,800	257,400	257,400	257,400		
			3	101-304	319,550	593,450	913,000	91,300	273,900	273,900	273,900		
			3	101-305	312,550	580,450	893,000	89,300	267,900	267,900	267,900		
			4	101-404	327,950	609,050	937,000	93,700	281,100	281,100	281,100		

4	101-405	320,950	596,050	917,000	91,700	275,100	275,100	275,100
5	101-504	332,850	618,150	951,000	95,100	285,300	285,300	285,300
5	101-505	325,850	605,150	931,000	93,100	279,300	279,300	279,300
6	101-604	334,250	620,750	955,000	95,500	286,500	286,500	286,500
6	101-605	327,250	607,750	935,000	93,500	280,500	280,500	280,500
7	101-704	335,650	623,350	959,000	95,900	287,700	287,700	287,700
7	101-705	328,650	610,350	939,000	93,900	281,700	281,700	281,700
8	101-804	337,050	625,950	963,000	96,300	288,900	288,900	288,900
8	101-805	330,050	612,950	943,000	94,300	282,900	282,900	282,900
9	101-904	338,450	628,550	967,000	96,700	290,100	290,100	290,100
9	101-905	331,450	615,550	947,000	94,700	284,100	284,100	284,100
10	101-1004	339,850	631,150	971,000	97,100	291,300	291,300	291,300
10	101-1005	332,850	618,150	951,000	95,100	285,300	285,300	285,300
11	101-1104	341,250	633,750	975,000	97,500	292,500	292,500	292,500
11	101-1105	334,250	620,750	955,000	95,500	286,500	286,500	286,500
12	101-1204	342,650	636,350	979,000	97,900	293,700	293,700	293,700
12	101-1205	335,650	623,350	959,000	95,900	287,700	287,700	287,700
13	101-1304	344,050	638,950	983,000	98,300	294,900	294,900	294,900
13	101-1305	337,050	625,950	963,000	96,300	288,900	288,900	288,900
14	101-1404	345,450	641,550	987,000	98,700	296,100	296,100	296,100
14	101-1405	338,450	628,550	967,000	96,700	290,100	290,100	290,100
15	101-1504	346,850	644,150	991,000	99,100	297,300	297,300	297,300
15	101-1505	339,850	631,150	971,000	97,100	291,300	291,300	291,300
16	101-1604	348,250	646,750	995,000	99,500	298,500	298,500	298,500
16	101-1605	341,250	633,750	975,000	97,500	292,500	292,500	292,500
17	101-1704	349,650	649,350	999,000	99,900	299,700	299,700	299,700
17	101-1705	342,650	636,350	979,000	97,900	293,700	293,700	293,700
18	101-1804	351,050	651,950	1,003,000	100,300	300,900	300,900	300,900
18	101-1805	344,050	638,950	983,000	98,300	294,900	294,900	294,900
19	101-1904	352,450	654,550	1,007,000	100,700	302,100	302,100	302,100
19	101-1905	345,450	641,550	987,000	98,700	296,100	296,100	296,100
20	101-2004	353,850	657,150	1,011,000	101,100	303,300	303,300	303,300
20	101-2005	346,850	644,150	991,000	99,100	297,300	297,300	297,300
21	101-2104	355,250	659,750	1,015,000	101,500	304,500	304,500	304,500
21	101-2105	348,250	646,750	995,000	99,500	298,500	298,500	298,500

		22	101-2204	356,650	662,350	1,019,000	101,900	305,700	305,700	305,700
		22	101-2205	349,650	649,350	999,000	99,900	299,700	299,700	299,700
		23	101-2304	358,050	664,950	1,023,000	102,300	306,900	306,900	306,900
		23	101-2305	351,050	651,950	1,003,000	100,300	300,900	300,900	300,900
		24	101-2404	359,450	667,550	1,027,000	102,700	308,100	308,100	308,100
		24	101-2405	352,450	654,550	1,007,000	100,700	302,100	302,100	302,100
		25	101-2504	360,850	670,150	1,031,000	103,100	309,300	309,300	309,300
		25	101-2505	353,850	657,150	1,011,000	101,100	303,300	303,300	303,300
		26	101-2604	362,250	672,750	1,035,000	103,500	310,500	310,500	310,500
		26	101-2605	355,250	659,750	1,015,000	101,500	304,500	304,500	304,500
		27	101-2704	363,650	675,350	1,039,000	103,900	311,700	311,700	311,700
		27	101-2705	356,650	662,350	1,019,000	101,900	305,700	305,700	305,700
		28	101-2804	365,050	677,950	1,043,000	104,300	312,900	312,900	312,900
		28	101-2805	358,050	664,950	1,023,000	102,300	306,900	306,900	306,900
		29	101-2904	366,450	680,550	1,047,000	104,700	314,100	314,100	314,100
		29	101-2905	359,450	667,550	1,027,000	102,700	308,100	308,100	308,100
		30	101-3004	367,850	683,150	1,051,000	105,100	315,300	315,300	315,300
		30	101-3005	360,850	670,150	1,031,000	103,100	309,300	309,300	309,300
		31	101-3104	369,250	685,750	1,055,000	105,500	316,500	316,500	316,500
		31	101-3105	362,250	672,750	1,035,000	103,500	310,500	310,500	310,500
		32	101-3204	370,650	688,350	1,059,000	105,900	317,700	317,700	317,700
		32	101-3205	363,650	675,350	1,039,000	103,900	311,700	311,700	311,700
	106동(4, 5)	1	106-105	289,800	538,200	828,000	82,800	248,400	248,400	248,400
		2	106-204	307,300	570,700	878,000	87,800	263,400	263,400	263,400
		2	106-205	300,300	557,700	858,000	85,800	257,400	257,400	257,400
		3	106-304	312,550	580,450	893,000	89,300	267,900	267,900	267,900
		3	106-305	305,550	567,450	873,000	87,300	261,900	261,900	261,900
		4	106-404	313,950	583,050	897,000	89,700	269,100	269,100	269,100
		4	106-405	306,950	570,050	877,000	87,700	263,100	263,100	263,100
		5	106-504	315,350	585,650	901,000	90,100	270,300	270,300	270,300
		5	106-505	308,350	572,650	881,000	88,100	264,300	264,300	264,300
		6	106-604	316,750	588,250	905,000	90,500	271,500	271,500	271,500
		6	106-605	309,750	575,250	885,000	88,500	265,500	265,500	265,500
		7	106-704	318,150	590,850	909,000	90,900	272,700	272,700	272,700

7	106-705	311,150	577,850	889,000	88,900	266,700	266,700	266,700
8	106-804	319,550	593,450	913,000	91,300	273,900	273,900	273,900
8	106-805	312,550	580,450	893,000	89,300	267,900	267,900	267,900
9	106-904	320,950	596,050	917,000	91,700	275,100	275,100	275,100
9	106-905	313,950	583,050	897,000	89,700	269,100	269,100	269,100
10	106-1004	322,350	598,650	921,000	92,100	276,300	276,300	276,300
10	106-1005	315,350	585,650	901,000	90,100	270,300	270,300	270,300
11	106-1104	323,750	601,250	925,000	92,500	277,500	277,500	277,500
11	106-1105	316,750	588,250	905,000	90,500	271,500	271,500	271,500
12	106-1204	325,150	603,850	929,000	92,900	278,700	278,700	278,700
12	106-1205	318,150	590,850	909,000	90,900	272,700	272,700	272,700
13	106-1304	326,550	606,450	933,000	93,300	279,900	279,900	279,900
13	106-1305	319,550	593,450	913,000	91,300	273,900	273,900	273,900
14	106-1404	327,950	609,050	937,000	93,700	281,100	281,100	281,100
14	106-1405	320,950	596,050	917,000	91,700	275,100	275,100	275,100
15	106-1504	329,350	611,650	941,000	94,100	282,300	282,300	282,300
15	106-1505	322,350	598,650	921,000	92,100	276,300	276,300	276,300
16	106-1604	330,750	614,250	945,000	94,500	283,500	283,500	283,500
16	106-1605	323,750	601,250	925,000	92,500	277,500	277,500	277,500
17	106-1704	332,150	616,850	949,000	94,900	284,700	284,700	284,700
17	106-1705	325,150	603,850	929,000	92,900	278,700	278,700	278,700
18	106-1804	333,550	619,450	953,000	95,300	285,900	285,900	285,900
18	106-1805	326,550	606,450	933,000	93,300	279,900	279,900	279,900
19	106-1904	334,950	622,050	957,000	95,700	287,100	287,100	287,100
19	106-1905	327,950	609,050	937,000	93,700	281,100	281,100	281,100
20	106-2004	336,350	624,650	961,000	96,100	288,300	288,300	288,300
20	106-2005	329,350	611,650	941,000	94,100	282,300	282,300	282,300
21	106-2104	337,750	627,250	965,000	96,500	289,500	289,500	289,500
21	106-2105	330,750	614,250	945,000	94,500	283,500	283,500	283,500
22	106-2204	339,150	629,850	969,000	96,900	290,700	290,700	290,700
22	106-2205	332,150	616,850	949,000	94,900	284,700	284,700	284,700
23	106-2304	340,550	632,450	973,000	97,300	291,900	291,900	291,900
23	106-2305	333,550	619,450	953,000	95,300	285,900	285,900	285,900
24	106-2404	341,950	635,050	977,000	97,700	293,100	293,100	293,100
24	106-2405	334,950	622,050	957,000	95,700	287,100	287,100	287,100

		25	106-2504	343,350	637,650	981,000	98,100	294,300	294,300	294,300
		25	106-2505	336,350	624,650	961,000	96,100	288,300	288,300	288,300
		26	106-2604	344,750	640,250	985,000	98,500	295,500	295,500	295,500
		26	106-2605	337,750	627,250	965,000	96,500	289,500	289,500	289,500
		27	106-2704	346,150	642,850	989,000	98,900	296,700	296,700	296,700
		27	106-2705	339,150	629,850	969,000	96,900	290,700	290,700	290,700
		28	106-2804	347,550	645,450	993,000	99,300	297,900	297,900	297,900
		28	106-2805	340,550	632,450	973,000	97,300	291,900	291,900	291,900
		29	106-2904	348,950	648,050	997,000	99,700	299,100	299,100	299,100
		29	106-2905	341,950	635,050	977,000	97,700	293,100	293,100	293,100
	108동(5, 6)	1	108-105	296,800	551,200	848,000	84,800	254,400	254,400	254,400
		2	108-205	307,300	570,700	878,000	87,800	263,400	263,400	263,400
		2	108-206	296,450	550,550	847,000	84,700	254,100	254,100	254,100
		3	108-305	312,550	580,450	893,000	89,300	267,900	267,900	267,900
		3	108-306	303,450	563,550	867,000	86,700	260,100	260,100	260,100
		4	108-405	313,950	583,050	897,000	89,700	269,100	269,100	269,100
		4	108-406	306,950	570,050	877,000	87,700	263,100	263,100	263,100
		5	108-505	315,350	585,650	901,000	90,100	270,300	270,300	270,300
		5	108-506	308,350	572,650	881,000	88,100	264,300	264,300	264,300
		6	108-605	316,750	588,250	905,000	90,500	271,500	271,500	271,500
		6	108-606	309,750	575,250	885,000	88,500	265,500	265,500	265,500
		7	108-705	318,150	590,850	909,000	90,900	272,700	272,700	272,700
		7	108-706	311,150	577,850	889,000	88,900	266,700	266,700	266,700
		8	108-805	319,550	593,450	913,000	91,300	273,900	273,900	273,900
		8	108-806	312,550	580,450	893,000	89,300	267,900	267,900	267,900
		9	108-905	320,950	596,050	917,000	91,700	275,100	275,100	275,100
		9	108-906	313,950	583,050	897,000	89,700	269,100	269,100	269,100
		10	108-1005	322,350	598,650	921,000	92,100	276,300	276,300	276,300
		10	108-1006	315,350	585,650	901,000	90,100	270,300	270,300	270,300
		11	108-1105	323,750	601,250	925,000	92,500	277,500	277,500	277,500
		11	108-1106	316,750	588,250	905,000	90,500	271,500	271,500	271,500
		12	108-1205	325,150	603,850	929,000	92,900	278,700	278,700	278,700
		12	108-1206	318,150	590,850	909,000	90,900	272,700	272,700	272,700
		13	108-1305	326,550	606,450	933,000	93,300	279,900	279,900	279,900
	14	108-1405	327,950	609,050	937,000	93,700	281,100	281,100	281,100	

			15	108-1505	329,350	611,650	941,000	94,100	282,300	282,300	282,300
			16	108-1605	330,750	614,250	945,000	94,500	283,500	283,500	283,500
			17	108-1705	332,150	616,850	949,000	94,900	284,700	284,700	284,700
			18	108-1805	333,550	619,450	953,000	95,300	285,900	285,900	285,900
			19	108-1905	334,950	622,050	957,000	95,700	287,100	287,100	287,100
			20	108-2005	336,350	624,650	961,000	96,100	288,300	288,300	288,300
84A	461	101동(2)	2	101-202	348,250	646,750	995,000	99,500	298,500	298,500	298,500
			3	101-302	355,250	659,750	1,015,000	101,500	304,500	304,500	304,500
			4	101-402	357,000	663,000	1,020,000	102,000	306,000	306,000	306,000
			5	101-502	358,750	666,250	1,025,000	102,500	307,500	307,500	307,500
			6	101-602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7	101-702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8	101-802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9	101-902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10	101-1002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11	101-1102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12	101-1202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13	101-1302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14	101-1402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15	101-1502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16	101-1602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17	101-1702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18	101-1802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19	101-1902	407,750	757,250	1,165,000	116,500	349,500	349,500	349,500
			20	101-2002	409,500	760,500	1,170,000	117,000	351,000	351,000	351,000
			21	101-2102	411,250	763,750	1,175,000	117,500	352,500	352,500	352,500
			22	101-2202	413,000	767,000	1,180,000	118,000	354,000	354,000	354,000
			23	101-2302	414,750	770,250	1,185,000	118,500	355,500	355,500	355,500
			24	101-2402	416,500	773,500	1,190,000	119,000	357,000	357,000	357,000
			25	101-2502	418,250	776,750	1,195,000	119,500	358,500	358,500	358,500
			26	101-2602	420,000	780,000	1,200,000	120,000	360,000	360,000	360,000
			27	101-2702	421,750	783,250	1,205,000	120,500	361,500	361,500	361,500
			28	101-2802	423,500	786,500	1,210,000	121,000	363,000	363,000	363,000
			29	101-2902	425,250	789,750	1,215,000	121,500	364,500	364,500	364,500
				102동(2, 3, 5, 6)	1	102-102	330,750	614,250	945,000	94,500	283,500

			1	102-103	330,750	614,250	945,000	94,500	283,500	283,500	283,500
			2	102-202	355,250	659,750	1,015,000	101,500	304,500	304,500	304,500
			2	102-203	355,250	659,750	1,015,000	101,500	304,500	304,500	304,500
			2	102-205	355,250	659,750	1,015,000	101,500	304,500	304,500	304,500
			2	102-206	355,250	659,750	1,015,000	101,500	304,500	304,500	304,500
			3	102-302	369,250	685,750	1,055,000	105,500	316,500	316,500	316,500
			3	102-303	369,250	685,750	1,055,000	105,500	316,500	316,500	316,500
			3	102-305	369,250	685,750	1,055,000	105,500	316,500	316,500	316,500
			3	102-306	369,250	685,750	1,055,000	105,500	316,500	316,500	316,500
			4	102-402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4	102-403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4	102-405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4	102-406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5	102-502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5	102-503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5	102-505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5	102-506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6	102-602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6	102-603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6	102-605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6	102-606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7	102-702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7	102-703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7	102-705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7	102-706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8	102-802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8	102-803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8	102-805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8	102-806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9	102-902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9	102-903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9	102-905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9	102-906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10	102-1002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10	102-1003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10	102-1005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10	102-1006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11	102-1102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11	102-1103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11	102-1105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11	102-1106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12	102-1202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12	102-1203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12	102-1205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12	102-1206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13	102-1302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13	102-1303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13	102-1305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13	102-1306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14	102-1402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14	102-1403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14	102-1405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14	102-1406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15	102-1502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15	102-1503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15	102-1505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15	102-1506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16	102-1602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16	102-1603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16	102-1605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16	102-1606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17	102-1702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17	102-1703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17	102-1705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17	102-1706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18	102-1802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18	102-1803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18	102-1805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18	102-1806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19	102-1903	407,750	757,250	1,165,000	116,500	349,500	349,500	349,500

		19	102-1905	407,750	757,250	1,165,000	116,500	349,500	349,500	349,500
		19	102-1906	407,750	757,250	1,165,000	116,500	349,500	349,500	349,500
		20	102-2003	409,500	760,500	1,170,000	117,000	351,000	351,000	351,000
		20	102-2005	409,500	760,500	1,170,000	117,000	351,000	351,000	351,000
		20	102-2006	409,500	760,500	1,170,000	117,000	351,000	351,000	351,000
		21	102-2103	411,250	763,750	1,175,000	117,500	352,500	352,500	352,500
		21	102-2105	411,250	763,750	1,175,000	117,500	352,500	352,500	352,500
		21	102-2106	411,250	763,750	1,175,000	117,500	352,500	352,500	352,500
		22	102-2203	413,000	767,000	1,180,000	118,000	354,000	354,000	354,000
		22	102-2205	413,000	767,000	1,180,000	118,000	354,000	354,000	354,000
		22	102-2206	413,000	767,000	1,180,000	118,000	354,000	354,000	354,000
		23	102-2305	414,750	770,250	1,185,000	118,500	355,500	355,500	355,500
		23	102-2306	414,750	770,250	1,185,000	118,500	355,500	355,500	355,500
		24	102-2405	416,500	773,500	1,190,000	119,000	357,000	357,000	357,000
		25	102-2505	418,250	776,750	1,195,000	119,500	358,500	358,500	358,500
		26	102-2605	420,000	780,000	1,200,000	120,000	360,000	360,000	360,000
	103동(2, 3, 4, 5, 6)	1	103-102	341,250	633,750	975,000	97,500	292,500	292,500	292,500
		1	103-103	341,250	633,750	975,000	97,500	292,500	292,500	292,500
		1	103-104	334,250	620,750	955,000	95,500	286,500	286,500	286,500
		1	103-105	358,750	666,250	1,025,000	102,500	307,500	307,500	307,500
		2	103-202	362,250	672,750	1,035,000	103,500	310,500	310,500	310,500
		2	103-203	362,250	672,750	1,035,000	103,500	310,500	310,500	310,500
		2	103-204	355,250	659,750	1,015,000	101,500	304,500	304,500	304,500
		2	103-205	372,750	692,250	1,065,000	106,500	319,500	319,500	319,500
		3	103-302	376,250	698,750	1,075,000	107,500	322,500	322,500	322,500
		3	103-303	376,250	698,750	1,075,000	107,500	322,500	322,500	322,500
		3	103-304	369,250	685,750	1,055,000	105,500	316,500	316,500	316,500
		3	103-305	379,750	705,250	1,085,000	108,500	325,500	325,500	325,500
		3	103-306	372,750	692,250	1,065,000	106,500	319,500	319,500	319,500
		4	103-402	381,500	708,500	1,090,000	109,000	327,000	327,000	327,000
		4	103-403	381,500	708,500	1,090,000	109,000	327,000	327,000	327,000
		4	103-404	374,500	695,500	1,070,000	107,000	321,000	321,000	321,000
		4	103-405	381,500	708,500	1,090,000	109,000	327,000	327,000	327,000
		4	103-406	374,500	695,500	1,070,000	107,000	321,000	321,000	321,000

5	103-502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5	103-503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5	103-504	376,250	698,750	1,075,000	107,500	322,500	322,500	322,500
5	103-505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5	103-506	376,250	698,750	1,075,000	107,500	322,500	322,500	322,500
6	103-602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6	103-603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6	103-604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6	103-605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6	103-606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7	103-702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7	103-703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7	103-704	379,750	705,250	1,085,000	108,500	325,500	325,500	325,500
7	103-705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7	103-706	379,750	705,250	1,085,000	108,500	325,500	325,500	325,500
8	103-802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8	103-803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8	103-804	381,500	708,500	1,090,000	109,000	327,000	327,000	327,000
8	103-805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8	103-806	381,500	708,500	1,090,000	109,000	327,000	327,000	327,000
9	103-902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9	103-903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9	103-904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9	103-905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9	103-906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10	103-1002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10	103-1003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10	103-1004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10	103-1005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10	103-1006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11	103-1102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11	103-1103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11	103-1104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11	103-1105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11	103-1106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12	103-1202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12	103-1203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12	103-1204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12	103-1205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12	103-1206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13	103-1302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13	103-1303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13	103-1304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13	103-1305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13	103-1306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14	103-1402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14	103-1403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14	103-1404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14	103-1405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14	103-1406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15	103-1502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15	103-1503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15	103-1504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15	103-1505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15	103-1506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16	103-1602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16	103-1603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16	103-1604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16	103-1605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16	103-1606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17	103-1702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17	103-1703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17	103-1704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17	103-1705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17	103-1706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18	103-1802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18	103-1803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18	103-1804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18	103-1805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18	103-1806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19	103-1902	407,750	757,250	1,165,000	116,500	349,500	349,500	349,500
19	103-1903	407,750	757,250	1,165,000	116,500	349,500	349,500	349,500
19	103-1904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19	103-1905	407,750	757,250	1,165,000	116,500	349,500	349,500	349,500
19	103-1906	407,750	757,250	1,165,000	116,500	349,500	349,500	349,500
20	103-2002	409,500	760,500	1,170,000	117,000	351,000	351,000	351,000
20	103-2003	409,500	760,500	1,170,000	117,000	351,000	351,000	351,000
20	103-2004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20	103-2005	409,500	760,500	1,170,000	117,000	351,000	351,000	351,000
20	103-2006	409,500	760,500	1,170,000	117,000	351,000	351,000	351,000
21	103-2102	411,250	763,750	1,175,000	117,500	352,500	352,500	352,500
21	103-2103	411,250	763,750	1,175,000	117,500	352,500	352,500	352,500
21	103-2104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21	103-2105	411,250	763,750	1,175,000	117,500	352,500	352,500	352,500
21	103-2106	411,250	763,750	1,175,000	117,500	352,500	352,500	352,500
22	103-2202	413,000	767,000	1,180,000	118,000	354,000	354,000	354,000
22	103-2203	413,000	767,000	1,180,000	118,000	354,000	354,000	354,000
22	103-2204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22	103-2205	413,000	767,000	1,180,000	118,000	354,000	354,000	354,000
22	103-2206	413,000	767,000	1,180,000	118,000	354,000	354,000	354,000
23	103-2303	414,750	770,250	1,185,000	118,500	355,500	355,500	355,500
23	103-2304	407,750	757,250	1,165,000	116,500	349,500	349,500	349,500
23	103-2305	414,750	770,250	1,185,000	118,500	355,500	355,500	355,500
23	103-2306	414,750	770,250	1,185,000	118,500	355,500	355,500	355,500
24	103-2403	416,500	773,500	1,190,000	119,000	357,000	357,000	357,000
24	103-2404	409,500	760,500	1,170,000	117,000	351,000	351,000	351,000
24	103-2405	416,500	773,500	1,190,000	119,000	357,000	357,000	357,000
24	103-2406	416,500	773,500	1,190,000	119,000	357,000	357,000	357,000
25	103-2503	418,250	776,750	1,195,000	119,500	358,500	358,500	358,500
25	103-2504	411,250	763,750	1,175,000	117,500	352,500	352,500	352,500
25	103-2505	418,250	776,750	1,195,000	119,500	358,500	358,500	358,500
25	103-2506	418,250	776,750	1,195,000	119,500	358,500	358,500	358,500
26	103-2603	420,000	780,000	1,200,000	120,000	360,000	360,000	360,000
26	103-2604	413,000	767,000	1,180,000	118,000	354,000	354,000	354,000
26	103-2605	420,000	780,000	1,200,000	120,000	360,000	360,000	360,000

		26	103-2606	420,000	780,000	1,200,000	120,000	360,000	360,000	360,000
		27	103-2703	421,750	783,250	1,205,000	120,500	361,500	361,500	361,500
		27	103-2704	414,750	770,250	1,185,000	118,500	355,500	355,500	355,500
		27	103-2705	421,750	783,250	1,205,000	120,500	361,500	361,500	361,500
		27	103-2706	421,750	783,250	1,205,000	120,500	361,500	361,500	361,500
	104동(1, 2)	1	104-101	351,750	653,250	1,005,000	100,500	301,500	301,500	301,500
		1	104-102	351,750	653,250	1,005,000	100,500	301,500	301,500	301,500
		2	104-201	358,750	666,250	1,025,000	102,500	307,500	307,500	307,500
		2	104-202	358,750	666,250	1,025,000	102,500	307,500	307,500	307,500
		3	104-301	362,250	672,750	1,035,000	103,500	310,500	310,500	310,500
		3	104-302	362,250	672,750	1,035,000	103,500	310,500	310,500	310,500
		4	104-401	364,000	676,000	1,040,000	104,000	312,000	312,000	312,000
		4	104-402	364,000	676,000	1,040,000	104,000	312,000	312,000	312,000
		5	104-501	365,750	679,250	1,045,000	104,500	313,500	313,500	313,500
		5	104-502	365,750	679,250	1,045,000	104,500	313,500	313,500	313,500
		6	104-601	367,500	682,500	1,050,000	105,000	315,000	315,000	315,000
		6	104-602	367,500	682,500	1,050,000	105,000	315,000	315,000	315,000
		7	104-701	369,250	685,750	1,055,000	105,500	316,500	316,500	316,500
		7	104-702	369,250	685,750	1,055,000	105,500	316,500	316,500	316,500
		8	104-801	371,000	689,000	1,060,000	106,000	318,000	318,000	318,000
		8	104-802	371,000	689,000	1,060,000	106,000	318,000	318,000	318,000
		9	104-901	372,750	692,250	1,065,000	106,500	319,500	319,500	319,500
	9	104-902	372,750	692,250	1,065,000	106,500	319,500	319,500	319,500	
	105동(1, 3, 4)	1	105-101	334,250	620,750	955,000	95,500	286,500	286,500	286,500
		1	105-103	341,250	633,750	975,000	97,500	292,500	292,500	292,500
		1	105-104	341,250	633,750	975,000	97,500	292,500	292,500	292,500
		2	105-201	348,250	646,750	995,000	99,500	298,500	298,500	298,500
2		105-203	355,250	659,750	1,015,000	101,500	304,500	304,500	304,500	
2		105-204	355,250	659,750	1,015,000	101,500	304,500	304,500	304,500	
3		105-301	355,250	659,750	1,015,000	101,500	304,500	304,500	304,500	
3		105-303	362,250	672,750	1,035,000	103,500	310,500	310,500	310,500	
3		105-304	362,250	672,750	1,035,000	103,500	310,500	310,500	310,500	
4		105-401	357,000	663,000	1,020,000	102,000	306,000	306,000	306,000	
4	105-403	364,000	676,000	1,040,000	104,000	312,000	312,000	312,000		

4	105-404	364,000	676,000	1,040,000	104,000	312,000	312,000	312,000
5	105-501	358,750	666,250	1,025,000	102,500	307,500	307,500	307,500
5	105-503	365,750	679,250	1,045,000	104,500	313,500	313,500	313,500
5	105-504	365,750	679,250	1,045,000	104,500	313,500	313,500	313,500
6	105-601	360,500	669,500	1,030,000	103,000	309,000	309,000	309,000
6	105-603	367,500	682,500	1,050,000	105,000	315,000	315,000	315,000
6	105-604	367,500	682,500	1,050,000	105,000	315,000	315,000	315,000
7	105-701	362,250	672,750	1,035,000	103,500	310,500	310,500	310,500
7	105-703	369,250	685,750	1,055,000	105,500	316,500	316,500	316,500
7	105-704	369,250	685,750	1,055,000	105,500	316,500	316,500	316,500
8	105-801	364,000	676,000	1,040,000	104,000	312,000	312,000	312,000
8	105-803	371,000	689,000	1,060,000	106,000	318,000	318,000	318,000
8	105-804	371,000	689,000	1,060,000	106,000	318,000	318,000	318,000
9	105-901	365,750	679,250	1,045,000	104,500	313,500	313,500	313,500
9	105-903	372,750	692,250	1,065,000	106,500	319,500	319,500	319,500
9	105-904	372,750	692,250	1,065,000	106,500	319,500	319,500	319,500
10	105-1001	367,500	682,500	1,050,000	105,000	315,000	315,000	315,000
10	105-1003	374,500	695,500	1,070,000	107,000	321,000	321,000	321,000
10	105-1004	374,500	695,500	1,070,000	107,000	321,000	321,000	321,000
11	105-1101	369,250	685,750	1,055,000	105,500	316,500	316,500	316,500
11	105-1103	376,250	698,750	1,075,000	107,500	322,500	322,500	322,500
11	105-1104	376,250	698,750	1,075,000	107,500	322,500	322,500	322,500
12	105-1201	371,000	689,000	1,060,000	106,000	318,000	318,000	318,000
12	105-1203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12	105-1204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13	105-1301	372,750	692,250	1,065,000	106,500	319,500	319,500	319,500
13	105-1303	379,750	705,250	1,085,000	108,500	325,500	325,500	325,500
13	105-1304	379,750	705,250	1,085,000	108,500	325,500	325,500	325,500
14	105-1401	374,500	695,500	1,070,000	107,000	321,000	321,000	321,000
14	105-1403	381,500	708,500	1,090,000	109,000	327,000	327,000	327,000
14	105-1404	381,500	708,500	1,090,000	109,000	327,000	327,000	327,000
15	105-1501	376,250	698,750	1,075,000	107,500	322,500	322,500	322,500
15	105-1503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15	105-1504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16	105-1601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16	105-1603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16	105-1604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17	105-1701	379,750	705,250	1,085,000	108,500	325,500	325,500	325,500
17	105-1703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17	105-1704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18	105-1801	381,500	708,500	1,090,000	109,000	327,000	327,000	327,000
18	105-1803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18	105-1804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19	105-1901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19	105-1903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19	105-1904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20	105-2001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20	105-2003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20	105-2004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21	105-2101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21	105-2103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21	105-2104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22	105-2201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22	105-2203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22	105-2204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23	105-2301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23	105-2303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23	105-2304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24	105-2401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24	105-2403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24	105-2404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25	105-2501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25	105-2503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25	105-2504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26	105-2601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26	105-2603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26	105-2604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27	105-2701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27	105-2703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27	105-2704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106동(1, 2)	28	105-2801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29	105-2901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1	106-102	369,250	685,750	1,055,000	105,500	316,500	316,500	316,500
		2	106-201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2	106-202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3	106-301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3	106-302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4	106-401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4	106-402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5	106-501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5	106-502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6	106-601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6	106-602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7	106-701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7	106-702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8	106-801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8	106-802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9	106-901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9	106-902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10	106-1001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10	106-1002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11	106-1101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11	106-1102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12	106-1201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12	106-1202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13	106-1301	407,750	757,250	1,165,000	116,500	349,500	349,500	349,500
		13	106-1302	407,750	757,250	1,165,000	116,500	349,500	349,500	349,500
		14	106-1401	409,500	760,500	1,170,000	117,000	351,000	351,000	351,000
		14	106-1402	409,500	760,500	1,170,000	117,000	351,000	351,000	351,000
		15	106-1501	411,250	763,750	1,175,000	117,500	352,500	352,500	352,500
15	106-1502	411,250	763,750	1,175,000	117,500	352,500	352,500	352,500		
16	106-1601	413,000	767,000	1,180,000	118,000	354,000	354,000	354,000		
16	106-1602	413,000	767,000	1,180,000	118,000	354,000	354,000	354,000		
17	106-1701	414,750	770,250	1,185,000	118,500	355,500	355,500	355,500		
17	106-1702	414,750	770,250	1,185,000	118,500	355,500	355,500	355,500		

		18	106-1801	416,500	773,500	1,190,000	119,000	357,000	357,000	357,000
		18	106-1802	416,500	773,500	1,190,000	119,000	357,000	357,000	357,000
		19	106-1901	418,250	776,750	1,195,000	119,500	358,500	358,500	358,500
		19	106-1902	418,250	776,750	1,195,000	119,500	358,500	358,500	358,500
		20	106-2001	420,000	780,000	1,200,000	120,000	360,000	360,000	360,000
		20	106-2002	420,000	780,000	1,200,000	120,000	360,000	360,000	360,000
		21	106-2101	421,750	783,250	1,205,000	120,500	361,500	361,500	361,500
		21	106-2102	421,750	783,250	1,205,000	120,500	361,500	361,500	361,500
		22	106-2201	423,500	786,500	1,210,000	121,000	363,000	363,000	363,000
		22	106-2202	423,500	786,500	1,210,000	121,000	363,000	363,000	363,000
		23	106-2301	425,250	789,750	1,215,000	121,500	364,500	364,500	364,500
		23	106-2302	425,250	789,750	1,215,000	121,500	364,500	364,500	364,500
		24	106-2401	427,000	793,000	1,220,000	122,000	366,000	366,000	366,000
		24	106-2402	427,000	793,000	1,220,000	122,000	366,000	366,000	366,000
		25	106-2501	428,750	796,250	1,225,000	122,500	367,500	367,500	367,500
		25	106-2502	428,750	796,250	1,225,000	122,500	367,500	367,500	367,500
		26	106-2601	430,500	799,500	1,230,000	123,000	369,000	369,000	369,000
		26	106-2602	430,500	799,500	1,230,000	123,000	369,000	369,000	369,000
		27	106-2701	432,250	802,750	1,235,000	123,500	370,500	370,500	370,500
		27	106-2702	432,250	802,750	1,235,000	123,500	370,500	370,500	370,500
	107동(3, 5)	1	107-103	327,250	607,750	935,000	93,500	280,500	280,500	280,500
		2	107-203	334,250	620,750	955,000	95,500	286,500	286,500	286,500
		2	107-205	358,750	666,250	1,025,000	102,500	307,500	307,500	307,500
		3	107-303	337,750	627,250	965,000	96,500	289,500	289,500	289,500
		3	107-305	362,250	672,750	1,035,000	103,500	310,500	310,500	310,500
		4	107-403	339,500	630,500	970,000	97,000	291,000	291,000	291,000
		4	107-405	364,000	676,000	1,040,000	104,000	312,000	312,000	312,000
		5	107-503	341,250	633,750	975,000	97,500	292,500	292,500	292,500
		5	107-505	365,750	679,250	1,045,000	104,500	313,500	313,500	313,500
		6	107-603	343,000	637,000	980,000	98,000	294,000	294,000	294,000
		6	107-605	367,500	682,500	1,050,000	105,000	315,000	315,000	315,000
		7	107-703	344,750	640,250	985,000	98,500	295,500	295,500	295,500
		7	107-705	369,250	685,750	1,055,000	105,500	316,500	316,500	316,500
		8	107-803	346,500	643,500	990,000	99,000	297,000	297,000	297,000
		8	107-805	371,000	689,000	1,060,000	106,000	318,000	318,000	318,000

		9	107-903	348,250	646,750	995,000	99,500	298,500	298,500	298,500
		9	107-905	372,750	692,250	1,065,000	106,500	319,500	319,500	319,500
		10	107-1003	350,000	650,000	1,000,000	100,000	300,000	300,000	300,000
		10	107-1005	374,500	695,500	1,070,000	107,000	321,000	321,000	321,000
		11	107-1103	351,750	653,250	1,005,000	100,500	301,500	301,500	301,500
		11	107-1105	376,250	698,750	1,075,000	107,500	322,500	322,500	322,500
		12	107-1203	353,500	656,500	1,010,000	101,000	303,000	303,000	303,000
		12	107-1205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13	107-1303	355,250	659,750	1,015,000	101,500	304,500	304,500	304,500
		13	107-1305	379,750	705,250	1,085,000	108,500	325,500	325,500	325,500
		14	107-1403	357,000	663,000	1,020,000	102,000	306,000	306,000	306,000
		14	107-1405	381,500	708,500	1,090,000	109,000	327,000	327,000	327,000
		15	107-1503	379,750	705,250	1,085,000	108,500	325,500	325,500	325,500
		15	107-1505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16	107-1603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16	107-1605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17	107-1703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17	107-1705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18	107-1803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18	107-1805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19	107-1903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19	107-1905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20	107-2003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20	107-2005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21	107-2105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22	107-2205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108동(3)	1	108-103	351,750	653,250	1,005,000	100,500	301,500	301,500	301,500
		2	108-203	358,750	666,250	1,025,000	102,500	307,500	307,500	307,500
		3	108-303	362,250	672,750	1,035,000	103,500	310,500	310,500	310,500
		4	108-403	364,000	676,000	1,040,000	104,000	312,000	312,000	312,000
		5	108-503	365,750	679,250	1,045,000	104,500	313,500	313,500	313,500
		6	108-603	367,500	682,500	1,050,000	105,000	315,000	315,000	315,000
		7	108-703	369,250	685,750	1,055,000	105,500	316,500	316,500	316,500
		8	108-803	371,000	689,000	1,060,000	106,000	318,000	318,000	318,000

			9	108-903	372,750	692,250	1,065,000	106,500	319,500	319,500	319,500	
			10	108-1003	374,500	695,500	1,070,000	107,000	321,000	321,000	321,000	
			11	108-1103	376,250	698,750	1,075,000	107,500	322,500	322,500	322,500	
			12	108-1203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13	108-1303	379,750	705,250	1,085,000	108,500	325,500	325,500	325,500	
			14	108-1403	381,500	708,500	1,090,000	109,000	327,000	327,000	327,000	
			15	108-1503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16	108-1603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17	108-1703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18	108-1803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19	108-1903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110동(1, 2)	2	110-201	416,500	773,500	1,190,000	119,000	357,000	357,000	357,000
				2	110-202	416,500	773,500	1,190,000	119,000	357,000	357,000	357,000
			111동(3)	2	111-203	416,500	773,500	1,190,000	119,000	357,000	357,000	357,000
112동(3)	2	112-203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84B	97	101동(1)	1	101-101	334,250	620,750	955,000	95,500	286,500	286,500	286,500	
			2	101-201	348,250	646,750	995,000	99,500	298,500	298,500	298,500	
			3	101-301	355,250	659,750	1,015,000	101,500	304,500	304,500	304,500	
			4	101-401	357,000	663,000	1,020,000	102,000	306,000	306,000	306,000	
			5	101-501	358,750	666,250	1,025,000	102,500	307,500	307,500	307,500	
			6	101-601	372,750	692,250	1,065,000	106,500	319,500	319,500	319,500	
			7	101-701	374,500	695,500	1,070,000	107,000	321,000	321,000	321,000	
			8	101-801	376,250	698,750	1,075,000	107,500	322,500	322,500	322,500	
			9	101-901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10	101-1001	379,750	705,250	1,085,000	108,500	325,500	325,500	325,500	
			11	101-1101	381,500	708,500	1,090,000	109,000	327,000	327,000	327,000	
			12	101-1201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13	101-1301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14	101-1401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15	101-1501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16	101-1601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17	101-1701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18	101-1801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19	101-1901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20	101-2001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21	101-2101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22	101-2201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23	101-2301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24	101-2401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25	101-2501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26	101-2601	407,750	757,250	1,165,000	116,500	349,500	349,500	349,500
		27	101-2701	409,500	760,500	1,170,000	117,000	351,000	351,000	351,000
		28	101-2801	411,250	763,750	1,175,000	117,500	352,500	352,500	352,500
		29	101-2901	413,000	767,000	1,180,000	118,000	354,000	354,000	354,000
	102동(1)	1	102-101	318,500	591,500	910,000	91,000	273,000	273,000	273,000
		2	102-201	343,000	637,000	980,000	98,000	294,000	294,000	294,000
		3	102-301	357,000	663,000	1,020,000	102,000	306,000	306,000	306,000
		4	102-401	365,750	679,250	1,045,000	104,500	313,500	313,500	313,500
		5	102-501	371,000	689,000	1,060,000	106,000	318,000	318,000	318,000
		6	102-601	372,750	692,250	1,065,000	106,500	319,500	319,500	319,500
		7	102-701	374,500	695,500	1,070,000	107,000	321,000	321,000	321,000
		8	102-801	376,250	698,750	1,075,000	107,500	322,500	322,500	322,500
		9	102-901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10	102-1001	379,750	705,250	1,085,000	108,500	325,500	325,500	325,500
		11	102-1101	381,500	708,500	1,090,000	109,000	327,000	327,000	327,000
		12	102-1201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13	102-1301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14	102-1401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15	102-1501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16	102-1601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103동(1)	1	103-101	420,350	780,650	1,201,000	120,100	360,300	360,300	360,300
		2	103-201	343,000	637,000	980,000	98,000	294,000	294,000	294,000
		3	103-301	357,000	663,000	1,020,000	102,000	306,000	306,000	306,000
		4	103-401	362,250	672,750	1,035,000	103,500	310,500	310,500	310,500
		5	103-501	364,000	676,000	1,040,000	104,000	312,000	312,000	312,000
		6	103-601	365,750	679,250	1,045,000	104,500	313,500	313,500	313,500
		7	103-701	367,500	682,500	1,050,000	105,000	315,000	315,000	315,000
		8	103-801	369,250	685,750	1,055,000	105,500	316,500	316,500	316,500
		9	103-901	371,000	689,000	1,060,000	106,000	318,000	318,000	318,000
		10	103-1001	372,750	692,250	1,065,000	106,500	319,500	319,500	319,500

		11	103-1101	374,500	695,500	1,070,000	107,000	321,000	321,000	321,000
		12	103-1201	376,250	698,750	1,075,000	107,500	322,500	322,500	322,500
		13	103-1301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14	103-1401	379,750	705,250	1,085,000	108,500	325,500	325,500	325,500
		15	103-1501	381,500	708,500	1,090,000	109,000	327,000	327,000	327,000
		16	103-1601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17	103-1701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18	103-1801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19	103-1901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20	103-2001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21	103-2101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105동(5)	2	105-205	325,500	604,500	930,000	93,000	279,000	279,000	279,000
		3	105-305	332,500	617,500	950,000	95,000	285,000	285,000	285,000
		4	105-405	334,250	620,750	955,000	95,500	286,500	286,500	286,500
		5	105-505	336,000	624,000	960,000	96,000	288,000	288,000	288,000
		6	105-605	337,750	627,250	965,000	96,500	289,500	289,500	289,500
		7	105-705	339,500	630,500	970,000	97,000	291,000	291,000	291,000
		8	105-805	341,250	633,750	975,000	97,500	292,500	292,500	292,500
		9	105-905	343,000	637,000	980,000	98,000	294,000	294,000	294,000
		10	105-1005	344,750	640,250	985,000	98,500	295,500	295,500	295,500
		11	105-1105	346,500	643,500	990,000	99,000	297,000	297,000	297,000
		12	105-1205	348,250	646,750	995,000	99,500	298,500	298,500	298,500
		13	105-1305	357,000	663,000	1,020,000	102,000	306,000	306,000	306,000
		14	105-1405	358,750	666,250	1,025,000	102,500	307,500	307,500	307,500
		15	105-1505	360,500	669,500	1,030,000	103,000	309,000	309,000	309,000
		16	105-1605	362,250	672,750	1,035,000	103,500	310,500	310,500	310,500
		17	105-1705	364,000	676,000	1,040,000	104,000	312,000	312,000	312,000
		18	105-1805	365,750	679,250	1,045,000	104,500	313,500	313,500	313,500
		19	105-1905	367,500	682,500	1,050,000	105,000	315,000	315,000	315,000
		20	105-2005	369,250	685,750	1,055,000	105,500	316,500	316,500	316,500
		21	105-2105	371,000	689,000	1,060,000	106,000	318,000	318,000	318,000
		22	105-2205	372,750	692,250	1,065,000	106,500	319,500	319,500	319,500
		23	105-2305	374,500	695,500	1,070,000	107,000	321,000	321,000	321,000
		24	105-2405	376,250	698,750	1,075,000	107,500	322,500	322,500	322,500

			25	105-2505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26	105-2605	379,750	705,250	1,085,000	108,500	325,500	325,500	325,500
			27	105-2705	381,500	708,500	1,090,000	109,000	327,000	327,000	327,000
			28	105-2805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29	105-2905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30	105-3005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31	105-3105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32	105-3205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2	101-203	322,000	598,000	920,000	92,000	276,000	276,000	276,000
			3	101-303	346,500	643,500	990,000	99,000	297,000	297,000	297,000
			4	101-403	365,750	679,250	1,045,000	104,500	313,500	313,500	313,500
			5	101-503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6	101-603	379,750	705,250	1,085,000	108,500	325,500	325,500	325,500
			7	101-703	381,500	708,500	1,090,000	109,000	327,000	327,000	327,000
			8	101-803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9	101-903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10	101-1003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11	101-1103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12	101-1203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13	101-1303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14	101-1403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15	101-1503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16	101-1603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17	101-1703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18	101-1803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19	101-1903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20	101-2003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21	101-2103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22	101-2203	407,750	757,250	1,165,000	116,500	349,500	349,500	349,500
			23	101-2303	409,500	760,500	1,170,000	117,000	351,000	351,000	351,000
			24	101-2403	411,250	763,750	1,175,000	117,500	352,500	352,500	352,500
			25	101-2503	413,000	767,000	1,180,000	118,000	354,000	354,000	354,000
			26	101-2603	414,750	770,250	1,185,000	118,500	355,500	355,500	355,500
			27	101-2703	416,500	773,500	1,190,000	119,000	357,000	357,000	357,000
			28	101-2803	418,250	776,750	1,195,000	119,500	358,500	358,500	358,500

		29	101-2903	420,000	780,000	1,200,000	120,000	360,000	360,000	360,000
	105동(2)	2	105-202	350,000	650,000	1,000,000	100,000	300,000	300,000	300,000
		3	105-302	357,000	663,000	1,020,000	102,000	306,000	306,000	306,000
		4	105-402	358,750	666,250	1,025,000	102,500	307,500	307,500	307,500
		5	105-502	360,500	669,500	1,030,000	103,000	309,000	309,000	309,000
		6	105-602	362,250	672,750	1,035,000	103,500	310,500	310,500	310,500
		7	105-702	364,000	676,000	1,040,000	104,000	312,000	312,000	312,000
		8	105-802	365,750	679,250	1,045,000	104,500	313,500	313,500	313,500
		9	105-902	367,500	682,500	1,050,000	105,000	315,000	315,000	315,000
		10	105-1002	369,250	685,750	1,055,000	105,500	316,500	316,500	316,500
		11	105-1102	371,000	689,000	1,060,000	106,000	318,000	318,000	318,000
		12	105-1202	372,750	692,250	1,065,000	106,500	319,500	319,500	319,500
		13	105-1302	374,500	695,500	1,070,000	107,000	321,000	321,000	321,000
		14	105-1402	376,250	698,750	1,075,000	107,500	322,500	322,500	322,500
		15	105-1502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16	105-1602	379,750	705,250	1,085,000	108,500	325,500	325,500	325,500
		17	105-1702	381,500	708,500	1,090,000	109,000	327,000	327,000	327,000
		18	105-1802	383,250	711,750	1,095,000	109,500	328,500	328,500	328,500
		19	105-1902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20	105-2002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21	105-2102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22	105-2202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23	105-2302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24	105-2402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25	105-2502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26	105-2602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27	105-2702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28	105-2802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29	105-2902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30	105-3002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31	105-3102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32	105-3202	407,750	757,250	1,165,000	116,500	349,500	349,500	349,500
		106동(3)	1	106-103	364,000	676,000	1,040,000	104,000	312,000	312,000
	2		106-203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3		106-303	385,000	715,000	1,100,000	110,000	330,000	330,000	330,000

		4	106-403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5	106-503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6	106-603	390,250	724,750	1,115,000	111,500	334,500	334,500	334,500
		7	106-703	392,000	728,000	1,120,000	112,000	336,000	336,000	336,000
		8	106-803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9	106-903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10	106-1003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11	106-1103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12	106-1203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13	106-1303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14	106-1403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15	106-1503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16	106-1603	407,750	757,250	1,165,000	116,500	349,500	349,500	349,500
		17	106-1703	409,500	760,500	1,170,000	117,000	351,000	351,000	351,000
		18	106-1803	411,250	763,750	1,175,000	117,500	352,500	352,500	352,500
		19	106-1903	413,000	767,000	1,180,000	118,000	354,000	354,000	354,000
		20	106-2003	414,750	770,250	1,185,000	118,500	355,500	355,500	355,500
		21	106-2103	416,500	773,500	1,190,000	119,000	357,000	357,000	357,000
		22	106-2203	418,250	776,750	1,195,000	119,500	358,500	358,500	358,500
		23	106-2303	420,000	780,000	1,200,000	120,000	360,000	360,000	360,000
		24	106-2403	421,750	783,250	1,205,000	120,500	361,500	361,500	361,500
		25	106-2503	423,500	786,500	1,210,000	121,000	363,000	363,000	363,000
		26	106-2603	425,250	789,750	1,215,000	121,500	364,500	364,500	364,500
		27	106-2703	427,000	793,000	1,220,000	122,000	366,000	366,000	366,000
	107동(4)	1	107-104	322,000	598,000	920,000	92,000	276,000	276,000	276,000
		2	107-204	329,000	611,000	940,000	94,000	282,000	282,000	282,000
		3	107-304	332,500	617,500	950,000	95,000	285,000	285,000	285,000
		4	107-404	334,250	620,750	955,000	95,500	286,500	286,500	286,500
		5	107-504	336,000	624,000	960,000	96,000	288,000	288,000	288,000
		6	107-604	337,750	627,250	965,000	96,500	289,500	289,500	289,500
		7	107-704	339,500	630,500	970,000	97,000	291,000	291,000	291,000
		8	107-804	341,250	633,750	975,000	97,500	292,500	292,500	292,500
		9	107-904	343,000	637,000	980,000	98,000	294,000	294,000	294,000
		10	107-1004	344,750	640,250	985,000	98,500	295,500	295,500	295,500

		11	107-1104	346,500	643,500	990,000	99,000	297,000	297,000	297,000
		12	107-1204	348,250	646,750	995,000	99,500	298,500	298,500	298,500
		13	107-1304	350,000	650,000	1,000,000	100,000	300,000	300,000	300,000
		14	107-1404	351,750	653,250	1,005,000	100,500	301,500	301,500	301,500
		15	107-1504	374,500	695,500	1,070,000	107,000	321,000	321,000	321,000
		16	107-1604	393,750	731,250	1,125,000	112,500	337,500	337,500	337,500
		17	107-1704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18	107-1804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19	107-1904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20	107-2004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21	107-2104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22	107-2204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23	107-2304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24	107-2404	407,750	757,250	1,165,000	116,500	349,500	349,500	349,500
		25	107-2504	409,500	760,500	1,170,000	117,000	351,000	351,000	351,000
		26	107-2604	411,250	763,750	1,175,000	117,500	352,500	352,500	352,500
		27	107-2704	413,000	767,000	1,180,000	118,000	354,000	354,000	354,000
		28	107-2804	414,750	770,250	1,185,000	118,500	355,500	355,500	355,500
	108동(4)	1	108-104	339,500	630,500	970,000	97,000	291,000	291,000	291,000
		2	108-204	346,500	643,500	990,000	99,000	297,000	297,000	297,000
		3	108-304	350,000	650,000	1,000,000	100,000	300,000	300,000	300,000
		4	108-404	351,750	653,250	1,005,000	100,500	301,500	301,500	301,500
		5	108-504	353,500	656,500	1,010,000	101,000	303,000	303,000	303,000
		6	108-604	355,250	659,750	1,015,000	101,500	304,500	304,500	304,500
		7	108-704	357,000	663,000	1,020,000	102,000	306,000	306,000	306,000
		8	108-804	358,750	666,250	1,025,000	102,500	307,500	307,500	307,500
		9	108-904	360,500	669,500	1,030,000	103,000	309,000	309,000	309,000
		10	108-1004	362,250	672,750	1,035,000	103,500	310,500	310,500	310,500
		11	108-1104	364,000	676,000	1,040,000	104,000	312,000	312,000	312,000
		12	108-1204	365,750	679,250	1,045,000	104,500	313,500	313,500	313,500
		13	108-1304	367,500	682,500	1,050,000	105,000	315,000	315,000	315,000
		14	108-1404	369,250	685,750	1,055,000	105,500	316,500	316,500	316,500
		15	108-1504	371,000	689,000	1,060,000	106,000	318,000	318,000	318,000
		16	108-1604	372,750	692,250	1,065,000	106,500	319,500	319,500	319,500
		17	108-1704	374,500	695,500	1,070,000	107,000	321,000	321,000	321,000

			18	108-1804	376,250	698,750	1,075,000	107,500	322,500	322,500	322,500
			19	108-1904	378,000	702,000	1,080,000	108,000	324,000	324,000	324,000
		111동(4)	2	111-204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112동(4)	2	112-204	388,500	721,500	1,110,000	111,000	333,000	333,000	333,000
84D	21	102동(4)	2	102-204	355,250	659,750	1,015,000	101,500	304,500	304,500	304,500
			3	102-304	362,250	672,750	1,035,000	103,500	310,500	310,500	310,500
			4	102-404	364,000	676,000	1,040,000	104,000	312,000	312,000	312,000
			5	102-504	386,750	718,250	1,105,000	110,500	331,500	331,500	331,500
			6	102-604	395,500	734,500	1,130,000	113,000	339,000	339,000	339,000
			7	102-704	397,250	737,750	1,135,000	113,500	340,500	340,500	340,500
			8	102-804	399,000	741,000	1,140,000	114,000	342,000	342,000	342,000
			9	102-904	400,750	744,250	1,145,000	114,500	343,500	343,500	343,500
			10	102-1004	402,500	747,500	1,150,000	115,000	345,000	345,000	345,000
			11	102-1104	404,250	750,750	1,155,000	115,500	346,500	346,500	346,500
			12	102-1204	406,000	754,000	1,160,000	116,000	348,000	348,000	348,000
			13	102-1304	407,750	757,250	1,165,000	116,500	349,500	349,500	349,500
			14	102-1404	409,500	760,500	1,170,000	117,000	351,000	351,000	351,000
			15	102-1504	411,250	763,750	1,175,000	117,500	352,500	352,500	352,500
			16	102-1604	413,000	767,000	1,180,000	118,000	354,000	354,000	354,000
			17	102-1704	414,750	770,250	1,185,000	118,500	355,500	355,500	355,500
			18	102-1804	416,500	773,500	1,190,000	119,000	357,000	357,000	357,000
			19	102-1904	418,250	776,750	1,195,000	119,500	358,500	358,500	358,500
			20	102-2004	420,000	780,000	1,200,000	120,000	360,000	360,000	360,000
			21	102-2104	421,750	783,250	1,205,000	120,500	361,500	361,500	361,500
			22	102-2204	423,500	786,500	1,210,000	121,000	363,000	363,000	363,000
			84E	2	111동(3)	1	111-103	382,550	710,450	1,093,000	109,300
112동(3)	1	112-103			358,050	664,950	1,023,000	102,300	306,900	306,900	306,900
84F	2	111동(4)	1	111-104	371,000	689,000	1,060,000	106,000	318,000	318,000	318,000
		112동(4)	1	112-104	353,500	656,500	1,010,000	101,000	303,000	303,000	303,000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익일 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 전용면적은 주택법에 따라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인·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등록세 포함), 인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등 비용이 포함된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 및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전체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향 후 지적확정측량,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면적은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준의 면적을 적용하였습니다.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주택형의 구분은 광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공급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 계약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 및 중도금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는 중도금 대출 전액을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로 납부 시에는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 본 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 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약식표기)		59A	59B	74	84A	84B	84C	84D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국가 유공자	3	-	3	9	2	3	1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4	9	2	3	1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2	1	3	10	2	2	1
	중소기업 근로자	2	1	3	9	2	3	-
	장애인	2	-	3	10	2	3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거주자(50%)	6	2	8	24	5	7	2
	서울시,인천시(50%)	5	1	8	23	5	7	1
생애최초 특별공급		10	2	14	42	9	13	2
신혼부부 특별공급		19	4	28	83	18	25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1	5	14	3	5	1
합 계		55	13	79	233	50	71	1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제4조 제1항 제2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04.20.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b>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b>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04세대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아래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추천 여부는 기관이 결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가구 수 및 대상자(예비자 포함)를 확정하고 특별공급 접수일 전에 동 대상자(예비자 포함)를 한국부동산원에 명단을 통지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구분	청약통장 구비여부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필요 없음	경기동부보훈지청 복지과 (031-289-2361)
장기복무 제대군인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장애인	청약통장 필요 없음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4),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과 (02-2133-7462),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032-440-2966)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031-201-6942)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02-2225-6378)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호의2(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호(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호(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5호(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6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0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① 임신의 경우 :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입양의 경우 :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자녀는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 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2023.02.2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 수 ▶ 청약자 연령]**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04.20.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함)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 포함)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시, 인천시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미달이 발생하는 잔여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은 서울시 및 인천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지역우선공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10년 이상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8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년 4월 20일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호 미적용)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04.20. 이전부터 계속 거주)**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04.20.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의원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으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자산보유 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6호(2023.02.28.)]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3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호 미적용)

▣ 당첨자 선정방법 [거주지역 ▶ 가점산정 기준표]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04.20.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2023.02.28.)]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9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및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합니다.
    - \*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를 말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년 4월 20일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130%초과~160%이하	8,462,289원~10,415,123원	9,908,674원~12,195,290원	10,452,641원~12,864,787원	11,312,132원~13,922,622원	12,171,623원~14,980,458원	13,031,114원~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인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 자산보유 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호 미적용)

###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04.20.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및 소득기준 심사방법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7호(2023.02.28.)]에 따릅니다.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신청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20.(목)]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li> <li>•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제2에 의거 <b>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04.20. 이전부터 계속 거주)</b>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 세대 발생 시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공급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기타지역(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li> <li>•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li> </ul> <p>※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입주자 저축 순위별 요건	민영 주택	1. 해당 주택건설지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22.04.20. 이전부터 계속 거주)</b> 2. 기타지역: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 거주자	1순위	전용 6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천제 (60%) 적용, 가점제 낙점자는 추천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b>12개월</b>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b>12개월</b>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b>12개월</b>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b>12개월</b>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전용 60㎡초과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 : <b>가점제(40%) 및 추천제(60%)를 적용</b>, 가점제 낙점자는 추천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 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li> </ul>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li>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li> <li>• 청약 전 반드시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확인(신청자 청약제한사항 등)을 검색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li>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ul>
-----------	--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 및 청약부금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로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불가합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2f2f2; padding: 5px;">세대원</div>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2f2f2; padding: 5px;">무주택기간 판단기준(예)</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만 29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li> <li>•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li> <li>•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5년.(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산정)</li> <li>• 기혼(만 28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혼(만 28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7세이고,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한 지 2년(혼인기간중)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li> <li>•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만 30세 이전 이혼, 재혼일 경우 혼인일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에 적용되는 혼인일자의 기산점은 최초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합니다.</li> </ul>
<p>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직계비속 부양가족 판단기준(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li> <li>•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만 30세 미만)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내국인 직계비속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내국인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li> </ul> <p>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직계존속 부양가족 판단기준(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청약신청자 주민등록에 1년 등재 + 계속해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2년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li> <li>•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등재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li> <li>•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li>•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므로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li> </ul> <p>3) 자녀(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자녀 및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b>미혼으로 한정한다.</b>              - 주택공급신청자의 <b>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b>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b>외국인인 직계비속</b>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p>
<p>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기준일) 및 제53(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조를 따릅니다.</p>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거주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비규제지역인 경우 삭제)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니

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공유지분이 아닌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단독상속)와 상속이 아닌 증여 등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속 후 일부증여 등으로 지분비율이 변경된 경우 일부증여분은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청약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주민등록표에 등재)한 상태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세대원 전체가 이주할 필요는 없으며, 청약신청자만 이주하면 됨)한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 2호 다목의 경우 최초 등록기준지는 청약신청자의 본적지를 의미하며, 상속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주택사업자란,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로서 해당업무분야에 주택판매나 분양목적으로 기재된 자를 말하며, 건설이 아닌 매입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또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개인주택사업자를 폐업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을 매입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5. 20㎡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20㎡ 이하의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소유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청약신청자 본인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멸실의 경우에는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여서 멸실되었다는 증빙이 필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라는 증빙(지자체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함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무허가건물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만 인정되고 연면적 200㎡ 미만 이거나 2층 이하인 건물에 한정합니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
-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시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주택과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일반공급 청약시 적용)

경합	주택수	적용례
제53조 각 호[5호(20㎡이하 소형주택) 제외] ⊕ 9호(소형·저가주택 등)	1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제53조 5호(20㎡이하 소형주택) ⊕ 9호(소형·저가주택 등)	2	5호 미적용 및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제53조 각 호 ⊕ 5호(20㎡이하 소형주택)	1	5호 미적용
제53조 각 호[5호(20㎡이하 소형주택) 제외] ⊕ 6호(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0	모두 적용
제53조 2호(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 ⊕ 제53조 6호(만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 9호(소형·저가주택 등)	1	2호·6호 주택 미소유,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판단 사례>

-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
-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

※ 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경쟁률로 판단. [경쟁발생 여부 판단은 주택유형(타입)에 대한 경쟁률을 말함]

구 분	공급 세대	접수	①정당 당첨자	② 잔여세대		분양권 현황 (주택소유 판단)
				미분양 (가)	미계약 (나)	
A주택형	100	200 (경쟁)	100	X	X	정당계약자는 모두 주택소유
B주택형	100	200 (경쟁)	100	X	20	(나) 주택소유 (20세대는 주택소유로 인정)
C주택형	100	50 (미달)	50	50	20	(가), (나) 주택소유 아님 (70세대 모두 주택소유로 보지 않음)
D주택형	100	50 (미달)	50	50	x	(가) 주택소유 아님 (50세대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음)

※ ① 최초 정당한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중 계약자는 경쟁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 ② 사후추가접수, 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 공급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계약취소 물량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모두 주택소유로 간주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IV 신청일정 및 장소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b>2023.05.02(화)</b>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li> <li>-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한정</li> </ul>
일반공급	1순위	<b>2023.05.03(수)</b>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2순위	<b>2023.05.04(목)</b>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치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를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구여권만 가능)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구여권만 가능)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특별공급 구비서류(주택전시관 방문 청약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주택전시관 비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주택전시관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신청자용)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제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본인 청약시)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구여권만 가능)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제외] 인터넷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청약불가(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20.(목)]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상세'로 발급)
	해외 단신부임	○		복무확인서	본인
○			증빙서류	본인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비자 발급내역 및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 불가시 불인정
○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원 전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원 확인이 안되는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변동사유,세대주 및 관계 등 모든정보 표시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출입국사실증명	세대원 전원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출입국기록 포함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해당기관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본인	주택전시관 비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구비여부 확인서	본인	주택전시관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비사업자의 경우(주택전시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구비여부 확인서	본인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자격입증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청약자격 확인 및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 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	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직계비속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한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구여권만 가능),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20.(목))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단,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전인 경우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모집공고일기준 금년도 신규사업자에 한함 ②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세무서/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③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단,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전인 경우 전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①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2022.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접수장소 ② 세무서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세 납부 제출서류	발급처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결정세액이 "0"원 또는 환급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첨부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	개별공시지가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시 토지를 소유한 경우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출력
		○	토지등기부등본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시 토지를 소유한 경우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부 등본 출력
		○	시가표준액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시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 위텍스 → 지방세정보 시가표준액 조회 후 출력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3.05.11.(목)</li> <li>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li> <li>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05.22.(월)~2023.05.24.(수) (10:00~17:00)</li> </ul> </li> <li>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주택전시관 (장소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li> </ul> </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전시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아래 계약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요건,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확인 등)
-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이 발생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https://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05.11.(목) ~ 2023.05.20.(토)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05.11.(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ul>

<p>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b></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ul> </li> <li>*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용인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2022.04.20. 이전부터 계속 거주)</b></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b>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b></li> <li>• <b>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택전시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주택전시관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시 이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급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구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대상자	장소
내용	2023.05.13.(토) ~ 2023.05.20.(토), 10:00 ~ 17:00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는 추후 별도 통보)	주택전시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는 아래 당첨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진행이 불가합니다.</li> <li>•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li> <li>•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서류'를 제출 기한까지 주택전시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li> <li>•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li> <li>•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권 포기자로 처리합니다.</li> <li>•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li> <li>• 상기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정책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주택전시관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li> </ul>		

## ▣ 계약 체결 전 자격확인서류(계약 시 필요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일반공급 필요서류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본인 계약시)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구여권만 가능)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청약불가(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록대조일을 발급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20.(목)]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증빙서류	본인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비자 발급내역 및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연수,관광,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 불가시 불인정
		○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원 전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세대원 확인이 안되는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유, 세대주 및 관계

		등 모든정보 표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세대원 전원	출생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출입국기록 포함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상세'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또는 해당지역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또는 25년 이상)을 명시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참조 (p.24~28)
일반공급 가점제 추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피부양 직계비속(만 30세 이상, 미혼)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서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 발급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해당주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20.(목)]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Ⅶ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비고
2023.05.22.(월) ~ 2023.05.24.(수) 3일간, (10:00~17:00)	당사 주택전시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1533-3442	일정 및 시간의 변동이 있을 시 당첨자를 대상으로 별도 공지함

- ※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b>계약금 납부계좌</b>	신한은행	140-013-277578	한국자산신탁(주)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		세대별 가상계좌		

※ 상기 입금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계약금 납부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향후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대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분양금액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비교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치 않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전시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구여권만 가능)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인감증명서는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소명자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계약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계약자 본인 발급용)
	○		신분증, 인장(서명 가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구여권만 가능)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4.20.(목)]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인 계약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6억 이상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로 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계약일 이후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에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8항에 의거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이자후불제)

• 계약자가 공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유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을 계획 중이며, 중도금 대출이자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대출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시행위탁자 등이 우선 대납하되, 계약자는 잔여 분양대금 납부 시에 공급대금 원금과 함께 전단의 대납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납부, 정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시행위탁사 등이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에 따라 대납하는 이자는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분에 한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계약자 직접 대출금유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계획 중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수도 있으므로,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수분양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10%) 완납하고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세 등 제반되는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 대출은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초과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중도금 대출 협약에 따라 중도금 1차(30%), 중도금 2차(30%)에 해당하는 대출금액**에 대하여 해당 대출의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 지정기간(입주지정기간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를 포함)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대출 이자는 사업주체가 납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지)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사가 우선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시행위탁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합니다.
  -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지합니다.
  - 최초 계약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수분양자)는 입주 전까지 중도금 대출금 원리금 전액을 대출금융기관에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담보대출 전환 시, (i) 이로 인한 보증수수료, 인지세, 기타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비용 등 제비용 일체는 대출금융기관과 계약자가 협의하여 정한 부담주체가 부담하기로 하며, (ii) 대출한도 및 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또한, (iii) 계약자는 앞서의 절차(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중도금대출 이자 후불제에 따른 사업주체의 이자대납 전액 상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의 이행) 완료된 경우에만 사업주체에게 공급계약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수분양자)는 공급계약의 해제(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원리금 전액을 대출계약만기일까지 자신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금융기관에 전액 상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시행위탁사는 대출금융기관과의 협약 및 공급계약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미상환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위변제(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행위탁사는 대위변제금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 후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같은 구상권 행사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급계약과 관계된(견련성 있는) 모든 채무(공급대금 잔액, 구상금 채무 잔액 등)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공급계약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공급계약상 모든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로 진행되는 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특약”도 소급적으로 실효되며 이 경우, 계약자는 공급계약상 위약금과는 별도로 (i)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에 따라 시행위탁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ii) (i)의 이자 외 중도금 대출금의 실제 상환 시까지 추가로 발생한 비용(예시 : 시행위탁사가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과정에서 부담한 추가 대출이자 또는 연체료 등), (iii) 기타, 중도금 대출원리금의 대출기한 내 미변제로 발생하는 연체료 등 제비용(명칭에 구애받지 않음) 일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되고, 계약자가 대출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 시행위탁사는 대출금융기관과의 협약 및 공급계약에 따라 계약자의 미상환 중도금 대출원리금을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위변제(상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수인, 동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 경우, 시행위탁사는 계약자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공급계약 해제 시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하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계약자의 기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차액을 시행위탁사에게 지급(배상)하여야 합니다.
-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 및 중도금 대출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2023.04.20.)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 제64조 및 동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 규정에 의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까지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의 전매(매매중여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 제외)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전매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어떠한 보장(전매추선보장, 전매수익보장 등)이나 약속을 하지 않는 바, 계약자는 향후 사업주체에게 전매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기타 부당한 요구할 수 없습니다.(이를 위반 시 계약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 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기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등의 상태를 확인할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에 의거 사전방문은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 할 계획이며,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 1개월전에 별도 통보예정 입니다.

■ 입주 및 유의사항

- **입주예정일 : 2024년 04월 예정**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경비실,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룸), 수영장, 락커룸 및 샤워실, 실내체육관, 작은도서관 및 주민회의실, 독서실, 북카페,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어린이놀이터(2개소) 및 유아놀이터(1개소) 등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공동주택관리법」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홈페이지 : <http://www.elife.co.kr>

■ 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번지

■ 분양문의 : 1533-3442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VIII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추가 선택 품목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가구 및 가전옵션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적용주택형	제조사	구성내용 및 상품모델	판매가격	비고
빌트인냉장고 + 김치냉장고 + 변온냉장고	전 주택형	삼성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RF60B91R2AP) (상부:새틴 / 하부:쉬머)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RQ34A79(8)45AP) (새틴) 비스포크 1도어 변온냉장고 (RZ24A59(8)G0AP) (쉬머)	7,300,000	택1 상품구성 및 모델, 도어재질 변경불가 (도어 색상 변경 가능하며 삼성전자에서 별도 안내 및 접수예정)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 (RF60B91R2AP) (상부:새틴 / 하부:새틴)	7,000,000	

			비스포크 1도어 김치냉장고 (RQ34A79(8)45AP) (새틴) 비스포크 1도어 변온냉장고 (RZ24A59(8)G0AP) (새틴)	
--	--	--	--	--

◎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상기 추가선택품목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시공사 디엘이앤씨(주)가 주관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제품상세내역,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안내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발행되는 계약서는 (추가선택품목II) 로 표기되며 본 공고문상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표기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자재비, 간접비 등의 비용과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세부사항(계약일정,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수분양자 부담)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은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이므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 (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공정상의 사유로 특약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내용은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제품의 모델 및 사양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 (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시 동제조사의 동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 불가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설치공간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삼성 비스포크 (4도어냉장고, 1도어 김치냉장고, 1도어 변온냉장고)를 맞춤 구성하여 판매하고, 상품의 구성과 모델, 설치위치, 도어 재질은 계약자가 임의로 변경,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단, 도어색상 선택 및 변경 신청은 삼성전자에서 시공사와 별도로 안내 및 접수 예정이며 미신청시 주택전시관에 전시된 내용으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비스포크)의 서비스내용 및 제품에 대한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서비스내용에 대한 민원,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비스포크의 경우 제조사의 하자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 빌트인 가전 선택시 설치부위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상세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추가선택품목 계약도 함께 해제됩니다.(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 해제 사유에 따라 위약금 및 원상복구 비용 발생함)
- 추가선택품목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이는 시공사에 귀속됩니다. 공정상의 사유로 특약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상세내용은 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서 상품구성 및 디자인, 제품모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으로 비스포크를 선택할 경우 설치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후면 및 측면,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빌트인 가전은 최초 계약자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 및 설치되며, 이후 선택변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비스포크set)는 최초 계약자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 및 설치되며 선택,변경,해지는 불가합니다 (명의 변경시 계약내용은 자동승계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하기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지정계좌(가상계좌) 입금 후 입금증 주택전시관 제출(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	우리은행	1005-404-492723	디엘이앤씨(주)	※ 무통장 입금시 의뢰인란에 반드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 요망 (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의 경우 → 1011403홍길동)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추가선택품목에 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 대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순 : 1020201홍길순)
- 잔금은 추가선택품목 계약 체결 시 실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지정된 납부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약금의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대금 납부계좌 (세대별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시공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기타 주요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 난방공간과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해당없음	지역난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 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표시

녹색건축물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div data-bbox="129 258 683 595"> <h3>녹색건축 예비 인증서</h3> <p><b>[건축물 개요]</b></p> <table border="1"> <tr><td>건축물명</td><td>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공동주택</td></tr> <tr><td>건축주</td><td>㈜영디엘</td></tr> <tr><td>주요(예정)업</td><td>-</td></tr> <tr><td>주소</td><td>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55-3 외 7필지</td></tr> <tr><td>층 수</td><td>지하 3층, 지상 32층 / 999세대</td></tr> <tr><td>면적</td><td>157,583.7523㎡</td></tr> <tr><td>건축물의 주민 용도</td><td>공동주택 및 부대시설</td></tr> <tr><td>설계자</td><td>㈜동원건축사사무소 건축</td></tr> </table> <p><b>[인증 개요]</b></p> <table border="1"> <tr><td>인증번호</td><td>제2020-2668호</td></tr> <tr><td>인증기관</td><td>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tr> <tr><td>유효기간</td><td>2020.05.25. ~ 시행일</td></tr> </table> <p><b>[인증 등급]</b></p> <p>인증등급 우수등급(베를린주)</p> <p>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p> <p>적용규칙 제2016-341호</p> <p>인증부서 제2016-118호</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data-bbox="129 729 683 995"> <p><b>[분야별 평가]</b> 종합등급 <b>★★★★☆</b></p> <table border="1"> <tr><td>토지이용 및 교통</td><td>61%</td></tr> <tr><td>에너지 및 환경모양</td><td>67%</td></tr> <tr><td>재료 및 자원</td><td>55%</td></tr> <tr><td>순환관리</td><td>66%</td></tr> <tr><td>유지관리</td><td>96%</td></tr> <tr><td>생태환경</td><td>53%</td></tr> <tr><td>실내환경</td><td>70%</td></tr> </table> <p>2020년 05월 25일</p> <p><b>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b>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p> <p>본 인증서를 받은 건축물은 환경 보호 공헌도를 위하여, 국가정책 차이를 반영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인증용 QR코드</p> </div> </div>	건축물명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공동주택	건축주	㈜영디엘	주요(예정)업	-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55-3 외 7필지	층 수	지하 3층, 지상 32층 / 999세대	면적	157,583.7523㎡	건축물의 주민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설계자	㈜동원건축사사무소 건축	인증번호	제2020-2668호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0.05.25. ~ 시행일	토지이용 및 교통	61%	에너지 및 환경모양	67%	재료 및 자원	55%	순환관리	66%	유지관리	96%	생태환경	53%	실내환경	70%	<div data-bbox="795 258 1355 1074"> <h3>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h3> <p>1. 공동주택명: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공동주택 2. 신청자: ㈜영디엘 3.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55-3 외 7필지 4. 신청등급</p> <p><b>가. 소용 관련 등급</b></p> <table border="1"> <tr><td>1. 생활환경 개선성능</td><td>★★★★</td></tr> <tr><td>2. 생활환경 개선성능</td><td>★★★★</td></tr> <tr><td>3. 세대 간 경계벽의 사용성능</td><td>★★★★</td></tr> <tr><td>4. 공동주택(도도, 통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화상설 급배수 소용</td><td>★★★</td></tr> </table> <p><b>나. 구조 관련 등급</b></p> <table border="1">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가변성</td><td>★★</td></tr> <tr><td>3. 구조의용인 적용부분</td><td>★★</td></tr> <tr><td>4. 수리용인 적용부분</td><td>★</td></tr> </table> <p><b>다. 환경 관련 등급</b></p> <table border="1"> <tr><td>1. 기온대지의 생태학적 가치</td><td>★★★★</td></tr> <tr><td>2. 파도천 지형개발 지양</td><td>★★★★</td></tr> <tr><td>3. 공공시설 조성도량 최소화</td><td>★★★★</td></tr> <tr><td>4. 불요불필 시설물의 대역외 퇴출</td><td>★★★★</td></tr> <tr><td>5.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설치</td><td>★★</td></tr> <tr><td>7. 신·재생에너지 이용</td><td>★★</td></tr> <tr><td>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td><td>★★</td></tr> <tr><td>9. 모순을 모호를 위한 특실용량리 사용 금지</td><td>★</td></tr> <tr><td>10. 환경친화적 제품(LEED)의 사용</td><td>★★</td></tr> <tr><td>11. 저탄소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3. 재활용가능한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배제</td><td>★★★</td></tr> <tr><td>15. 재활용가능한 자재의 분리·배출 설치</td><td>★★★</td></tr> <tr><td>16. 빗물관리</td><td>★★</td></tr> <tr><td>17. 빗물 및 유용자재의 이용</td><td>★★★</td></tr> <tr><td>18. 물 절약 기기 사용</td><td>★★</td></tr> <tr><td>19. 물 사용량 모니터링</td><td>★★</td></tr> </table> <p><b>라. 화재·소방 관련 등급</b></p> <table border="1"> <tr><td>1. 화재 및 감지기</td><td>★★</td></tr> <tr><td>2. 화재경보</td><td>★</td></tr> <tr><td>3. 내화성능</td><td>★</td></tr> <tr><td>4. 수문차단기</td><td>★★</td></tr> <tr><td>5. 복도 및 계단 유도등</td><td>★★</td></tr> <tr><td>6. 피난안내</td><td>★</td></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0년 05월 25일</p> <p><b>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b></p> <p>210mm×210mm(면적) 120g/m<sup>2</sup></p> </div>	1. 생활환경 개선성능	★★★★	2. 생활환경 개선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사용성능	★★★★	4. 공동주택(도도, 통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상설 급배수 소용	★★★	1. 내구성	★★★	2. 가변성	★★	3. 구조의용인 적용부분	★★	4. 수리용인 적용부분	★	1. 기온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파도천 지형개발 지양	★★★★	3. 공공시설 조성도량 최소화	★★★★	4. 불요불필 시설물의 대역외 퇴출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설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모순을 모호를 위한 특실용량리 사용 금지	★	10. 환경친화적 제품(LEE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재활용가능한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배제	★★★	15. 재활용가능한 자재의 분리·배출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용자재의 이용	★★★	18. 물 절약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1. 화재 및 감지기	★★	2. 화재경보	★	3. 내화성능	★	4. 수문차단기	★★	5. 복도 및 계단 유도등	★★	6. 피난안내	★	<div data-bbox="1456 258 2049 1136"> <h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h3> <p><b>건축물 개요</b></p> <table border="1"> <tr><td>건축물명</td><td>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공동주택</td></tr> <tr><td>층수</td><td>20240528</td></tr> <tr><td>주소</td><td>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55-3</td></tr> <tr><td>층 수</td><td>지하3층 / 지상32층</td></tr> <tr><td>면적</td><td>157583.7523(㎡)</td></tr> <tr><td>건축물의 주민 용도</td><td>공동주택</td></tr> <tr><td>설계자</td><td>동원건축사사무소 건축</td></tr> </table> <p><b>인증 개요</b></p> <table border="1"> <tr><td>인증번호</td><td>20-주-에-14-0090</td></tr> <tr><td>평가자</td><td>이주영</td></tr> <tr><td>인증기관</td><td>한국건설에너지지원원</td></tr> <tr><td>유효기간</td><td>한국에너지공단</td></tr> <tr><td>유요기준</td><td>시행중인 모든 시행령서 유효함</td></tr> </table> <p><b>인증등급</b>: 1등급</p> <p><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b></p> <table border="1"> <tr><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요구량</th><th>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등급</th><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th>배출량</th></tr> <tr><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물</td><td>100</td><td>100.5</td><td>1</td><td>48</td><td>49.0</td></tr> <tr><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물</td><td>200</td><td>200.5</td><td>2</td><td>56</td><td>57.0</td></tr> <tr><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물</td><td>300</td><td>300.5</td><td>3</td><td>64</td><td>65.0</td></tr> <tr><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물</td><td>400</td><td>400.5</td><td>4</td><td>72</td><td>73.0</td></tr> <tr><td>에너지 저소비량 건축물</td><td>500</td><td>500.5</td><td>5</td><td>-</td><td>-</td></tr> </table> <p><b>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b></p> <table border="1"> <tr><th>구분</th><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1차 에너지소요량(kWh/㎡·년)</th><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tr> <tr><td>냉방</td><td>0.0</td><td>0.0</td><td>0.0</td><td>0.0</td></tr> <tr><td>난방</td><td>51.4</td><td>66.7</td><td>56.9</td><td>11.3</td></tr> <tr><td>급탕</td><td>30.7</td><td>37.2</td><td>28.0</td><td>6.2</td></tr> <tr><td>조명</td><td>8.4</td><td>7.9</td><td>21.7</td><td>3.7</td></tr> <tr><td>환기</td><td>-</td><td>3.3</td><td>9.1</td><td>1.6</td></tr> <tr><td>합계</td><td>90.5</td><td>115.1</td><td>109.7</td><td>22.8</td></tr>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의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종류, 가열,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p> <p>*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없지만 ( V )설치되었기에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항목 등에 다른 보정계수를 반영할 결과입니다.</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저탄소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20년 05월 18일</p> <p><b>한국건설에너지지원원</b></p> </div>	건축물명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공동주택	층수	20240528	주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55-3	층 수	지하3층 / 지상32층	면적	157583.7523(㎡)	건축물의 주민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동원건축사사무소 건축	인증번호	20-주-에-14-0090	평가자	이주영	인증기관	한국건설에너지지원원	유효기간	한국에너지공단	유요기준	시행중인 모든 시행령서 유효함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물	100	100.5	1	48	49.0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물	200	200.5	2	56	57.0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물	300	300.5	3	64	65.0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물	400	400.5	4	72	73.0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물	500	500.5	5	-	-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51.4	66.7	56.9	11.3	급탕	30.7	37.2	28.0	6.2	조명	8.4	7.9	21.7	3.7	환기	-	3.3	9.1	1.6	합계	90.5	115.1	109.7	22.8
건축물명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공동주택																																																																																																																																																																																																								
건축주	㈜영디엘																																																																																																																																																																																																								
주요(예정)업	-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55-3 외 7필지																																																																																																																																																																																																								
층 수	지하 3층, 지상 32층 / 999세대																																																																																																																																																																																																								
면적	157,583.7523㎡																																																																																																																																																																																																								
건축물의 주민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설계자	㈜동원건축사사무소 건축																																																																																																																																																																																																								
인증번호	제2020-2668호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0.05.25. ~ 시행일																																																																																																																																																																																																								
토지이용 및 교통	61%																																																																																																																																																																																																								
에너지 및 환경모양	67%																																																																																																																																																																																																								
재료 및 자원	55%																																																																																																																																																																																																								
순환관리	66%																																																																																																																																																																																																								
유지관리	96%																																																																																																																																																																																																								
생태환경	53%																																																																																																																																																																																																								
실내환경	70%																																																																																																																																																																																																								
1. 생활환경 개선성능	★★★★																																																																																																																																																																																																								
2. 생활환경 개선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사용성능	★★★★																																																																																																																																																																																																								
4. 공동주택(도도, 통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상설 급배수 소용	★★★																																																																																																																																																																																																								
1. 내구성	★★★																																																																																																																																																																																																								
2. 가변성	★★																																																																																																																																																																																																								
3. 구조의용인 적용부분	★★																																																																																																																																																																																																								
4. 수리용인 적용부분	★																																																																																																																																																																																																								
1. 기온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파도천 지형개발 지양	★★★★																																																																																																																																																																																																								
3. 공공시설 조성도량 최소화	★★★★																																																																																																																																																																																																								
4. 불요불필 시설물의 대역외 퇴출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설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모순을 모호를 위한 특실용량리 사용 금지	★																																																																																																																																																																																																								
10. 환경친화적 제품(LEE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재활용가능한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배제	★★★																																																																																																																																																																																																								
15. 재활용가능한 자재의 분리·배출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용자재의 이용	★★★																																																																																																																																																																																																								
18. 물 절약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1. 화재 및 감지기	★★																																																																																																																																																																																																								
2. 화재경보	★																																																																																																																																																																																																								
3. 내화성능	★																																																																																																																																																																																																								
4. 수문차단기	★★																																																																																																																																																																																																								
5. 복도 및 계단 유도등	★★																																																																																																																																																																																																								
6. 피난안내	★																																																																																																																																																																																																								
건축물명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공동주택																																																																																																																																																																																																								
층수	20240528																																																																																																																																																																																																								
주소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55-3																																																																																																																																																																																																								
층 수	지하3층 / 지상32층																																																																																																																																																																																																								
면적	157583.7523(㎡)																																																																																																																																																																																																								
건축물의 주민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동원건축사사무소 건축																																																																																																																																																																																																								
인증번호	20-주-에-14-0090																																																																																																																																																																																																								
평가자	이주영																																																																																																																																																																																																								
인증기관	한국건설에너지지원원																																																																																																																																																																																																								
유효기간	한국에너지공단																																																																																																																																																																																																								
유요기준	시행중인 모든 시행령서 유효함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물	100	100.5	1	48	49.0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물	200	200.5	2	56	57.0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물	300	300.5	3	64	65.0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물	400	400.5	4	72	73.0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물	500	500.5	5	-	-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51.4	66.7	56.9	11.3																																																																																																																																																																																																					
급탕	30.7	37.2	28.0	6.2																																																																																																																																																																																																					
조명	8.4	7.9	21.7	3.7																																																																																																																																																																																																					
환기	-	3.3	9.1	1.6																																																																																																																																																																																																					
합계	90.5	115.1	109.7	22.8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른 인증(본인증)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IX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분	내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li> <li>•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공급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유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li> <li>• 본 아파트는 999세대 (10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 공급금액은 면적,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 되었습니다.</li> <li>•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 및 주변의 현상상 여건, 주변 혐오·유해시설 유무, 교통여건 및 각종 구조물,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 진입로, 주변 건물에 의한 소음, 조망권, 일조 및 시야 간섭 등 주변 환경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제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수인·동의합니다.</li> <li>• <b>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가 공식적으로 제작 및 배포한 광고홍보물(분양 홈페이지 내 이미지, 동영상, 리플렛, 공급안내서 등)의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및 교통계획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에서 발표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 개발계획” 내용이며, 추후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b></li> <li>• 사업지 주변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운행시기, 운영, 노선,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주체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계약 전 주택전시관 내 모형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li> <li>•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당사자인 분양사업자 및 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li> <li>•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같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li> <li>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li> <li>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합니다.</li> <li>라.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li> </ul> </li> </ul> </li> <li>• 보증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li> <li>•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한국부동산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li> <li>• 2023.01.01.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 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일이 속한 달의 <b>다음달 10일까지</b>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a href="https://www.e-revenuestamp.or.kr">https://www.e-revenuestamp.or.kr</a>)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공사 및 뉘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li> <li>•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사회재난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고,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수인·동의합니다.</li> <li>• 지역 내 및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분양사업자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세대별 등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li> <li>•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입)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li> <li>• 계약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li> <li>각 세대별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지적정리,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2항에 의거 2 이상 등록사업자의 사용검사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 완료된 아파트입니다.</li> <li>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li> <li>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li> <li>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합니다.</li> <li>계약체결 후 해약하거나 관련법 위반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li> <li>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 및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li> <li>입주지정기일 이후 분양계약자의 50% 이상이 소유권이전 등기 및 입주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유주는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사업주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전에 건축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업주체는 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관련 용역계약에 의거 부과되는 관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li> </ul>
<p>민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지 인근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사업추진여건 변화, 관계기관 및 승인기관 협의과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모형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디자인은 시공사 브랜드 기준의 변경, 디자인 개선 등으로 형태, 재질, 문양, 줄눈, 돌출, 색상 등 디테일은 실시공사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 복리시설이고, 별도의 분양시설입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아파트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은 101동, 102동과 인접하여 계획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들은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대시설(실외기, 옥외주차장, 생활폐기물 보관소)에 의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li> <li><b>본 아파트 건립으로 유입되는 초등학교는 마성초등학교 중학생은 구성중학군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다만, 교육부 정책 등 주변 개발계획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b></li> <li>준공 전후 계약자(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및 공용부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계획승인도서 이외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입주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법적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li> <li>단지배치 여건상 각 세대별로 조망, 향, 일조 등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시고, 일부 세대는 단지배치 현황에 따라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계약체결일 이후 사업부지 주변에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각 세대별로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및 지하 주동 출입구 등 공용부 디자인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공사중 현장여건 반영 및 품질개선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li> <li>분양 시 각종 인쇄물 및 컴퓨터그래픽(CG), 인터넷 홍보물, 모형 등에 표현된 분양목적물의 평면, 치수, 면적, 건축물 마감 및 디자인, 사인, 도로, 조경 및 시설물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중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중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에 대한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랍니다.</li> <li>주택전시관 및 공급안내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동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간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인·동의합니다.</li> <li>단지내 경관조명, 각종 사인물, 단지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전기, 수도, 가스 등 포함)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및 디자인 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li> <li>시공사는 시공상의 하자부문에 한하여 하자보증 기간 내에서 보수의 책임을 지며,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여 분양하는 타 상품과의 상품, 외관, 마감사양, 엘리베이터 개소,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및 면적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li> <li>아파트 하자판정 및 보수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li> <li>입주 이후 계약자(입주자)의 사용 및 유지·관리상 미흡에 따른 자재, 시설, 제품 등의 성능저하 발생 시 '계약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으로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li> <li>추후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 관리비(전기, 수도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천연석, 시트, 타일의 경우 동일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재의 특성상 무늬, 패턴, 칼라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li> <li>석재 등 천연자재의 경우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크기, 색상 및 무늬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li> <li>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공용 파이프 샤프트, 저층, 고층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등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li> <li>입주 후 주민공동시설, 우수조, 저수조, 태양광패널, 반사경을 이용한 일조 제어시스템(엘리오스)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전기, 수도, 가스 등 포함)은 입주자(입점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공사시 시설물에</li> </ul>

	<p>대한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일부 주동 옥상, 옥탑층에는 저층부 세대의 일조량 확보를 위해 반사경을 이용한 일조 제어시스템(엘리오스)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빛반사에 의한 옥외 및 일부 세대 내에서 눈 부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출입구의 경비실 및 주차 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위치 및 수량 등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인지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조정 및 세부 식재는 현장여건, 생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마감 물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현관/다용도실 등 바닥단차가 있는 부위는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욕실 슬리퍼와 욕실도어 간 걸림현상과 무관합니다.</li> <li>• 101동, 102동 저층부 일부 세대는 하루 지하층 발전기실과 인접해 있어 발전기 운전시 소음 및 진동 등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li> <li>• 각 주동 내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 계단실, 옥탑 등 공용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화(물건 적치 등)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층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li> <li>• 일부 주거동 코어의 경우 계단실에 외부창호가 없으므로 환기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별로 구조 및 천장설비 등의 설치가 상이하므로 세대 내 천장 높이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필히 현장 및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 준공 후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지하2~3층 주동 PIT 일부 공간에 관련 공사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li> <li>• 지역열원배관, 오수 집수시설, 상하수도 배관, 전기/통신 인입 배관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li> <li>•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li> <li>• 로비, 엘리베이터홀, 복도 등 공용공간은 관계법령 및 현장여건 에 따라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부위에 하자 발생은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하자발생의 책임소재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ransform: rotate(180deg);">주 택 전 시 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전시관에는 74타입, 84A타입, 84B타입의 샘플하우스가 설치되고, 그 외 미설치된 평형 및 타입은 분양안내문을 통해 참고 바라며, 주택전시관 내에 비치된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분양상담 등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전시관 미건립세대 [59A, 59B, 59C]타입은 건립세대인 [74]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 전반적인 디자인 컨셉이 동일하지만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재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색상의 조합 등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분양자료(분양 카달로그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전시관 미건립세대 [84C, 84D, 84E, 84F]타입은 건립세대인 [84A]타입과 세대 마감재 및 색상 등 전반적인 디자인 컨셉이 동일하지만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재 및 가구구성, 가구길이, 가구색상의 조합 등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분양자료(분양 카달로그 등)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계약자는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가 공식적으로 제작 및 배포한 광고홍보물(분양 홈페이지 내 이미지, 동영상, 리플렛, 공급안내서 등) 이외의 홍보자료와 구두 과대광고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부 분양상담직원, 부동산중개인(법인), 기타 개인이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제작하여 개인 매체(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게시, 배포, 전파한 사항에 대해 시행위탁자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라 며, 공식 광고홍보를 여부는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에게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공급안내 등 인쇄물과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광고홍보물이므로 본 단지 및 주변환경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거 나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인터넷홈페이지의 VR동영상/주택전시관 건립세대에 한함, 그 외 타입은 이미지 제공)은 주택전시관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전사용 상품이 포함된 영상이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주택전시관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 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 자체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현장여건에 따라 등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전시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시행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주택전시관 내 건립세대, 카달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공급대상이 아니며,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li> <li>•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속/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 준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li> <li>•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전시관에 설치 된 모형은 대지 주변현황, 조경, 도로의 고저차, 대지 경계선 의 위치, 각종 시설물(담장, 석축, 조경, 펜스)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의 샘플하우스는 관람 동선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설비 기기, 각 실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각 세대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디스플레이, 점검구의 개수 및 위치 등은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고 각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 랍니다.</li> <li>•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워생기구 및 액세서리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 제품사양, 형태 등은 변 경(제품 단종,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 등급 또는 동 가격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포함)될 수 있으며, 각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기계장치, 천장환기구(디퓨저), 수전,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 배수배관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전시관 내 등기구 조도량(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 공사 시 설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전시관 천장, 벽 등에 설치된 전사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주택전시관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 바, 주택전시관의 연출용으로 시공된 부분은 실제로 시공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주택전시관에서 확인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 계약자가 추후 별도로 설치를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은 해당 타입의 구조적인 이유로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에서 반드시 설치가 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건식벽체,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 상의 이유로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ul>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 외벽 등은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제작된 참고용 제품으로 실제 본 공사 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프레임, 손잡이, 유리 등 구성요소의 형태, 재질, 색채, 사양, 열림(개폐)방향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의 수량, 용량, 위치, 타입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에 설치되는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 될 예정이며,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위치와는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의 취향 및 식탁 가구배치 형태 등을 사유로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하향식피난구 설치공간, 창호, 하향식 피난구, 등의 위치 및 크기는 본 공사 시 관련법에 맞추어 설치되며, 하향식피난구의 위치는 위아래층이 교차되어 시공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 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 및 공급예정이며 그에 따라 주택전시관, 분양홍보물 등에 설치 및 기재된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남서측에 인접하여 30m도로(용구대로) 및 20m도로(구성로)가 인접해 있어 도로와 인접한 주동의 세대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불빛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남서측 구성로, 용구대로와 인접한 단지경계부분에 투시형 방음벽(길이 약98m, 높이 약1m)이 관련법에 의거해 설치될 예정이며, 방음벽의 형태 및 높이 등은 현장여건, 소음측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방음벽과 인접한 주동(101동, 102동, 106동)의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간섭, 환기저하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차량 주출입구는 남측 20m도로(구성로)에 1개소가 계획되어 있고 드롭오프존 및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단지 차량 주출입구(문주)의 높이는 약7m이며,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지하2층 약2.7m, 지하3층 약2.3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단지 내부로 진입하는 보행자 동선은 남서측에 인접한 20m도로(구성로)에 2개소, 북동측에 인접한 보도(용구대로 2360번길)에 1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측량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계획고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li> <li>• 본 단지와 인접대지 및 인접도로와의 높이차이로 인해 경계부 마감(범면, 돌쌓기, 옹벽 펜스 등)이 형성되며 본 시공시 일부 구간의 높이 및 형태,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대지경계에 설치되는 담장, 석축, 조경, 경계석, 펜스 등 각종 시설물 등은 현재 대지경계에 설치된 각종 지장물(담장, 석축, 조경, 경계석, 펜스)에 의해서 일부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는 도로법에 의거 도로점용이 되며, 점용료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입점자가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동호수표시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물재이용시설의 담수를 위한 우수조가 설치 되어 있으며, 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은 발생 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층격을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을 준수하며 세대 간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단지는 12개동으로 구성되며 배치계획상 단지레벨, 주변 환경 등에 따라 각동의 진입부 위치, 높이, 형태, 개소 등이 각 동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내 주동배치 계획에 따른 일부세대 영구 음영이 존재 할 수 있으니, 해당여부를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 세대의 일조량은 계절, 시간, 주변 지형이나 수목의 성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조량에 대하여 확정적인 설명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내 일부 중저층 세대는 외부 도로 및 인접대지 보다 레벨이 낮을 수 있으며 단지 주변 레벨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계부 마감(범면, 돌쌓기, 옹벽 등) 및 인근 주변 건물(구성 우림아파트, 북측 빌라 등)들과의 간섭으로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동측 우림아파트, 서측 보훈지청 대지경계부는 기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기존 석축, 옹벽, 식재 등이 존치되니 계약 전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대지경계에 설치되는 담장, 석축, 조경, 경계석, 펜스 등 각종 시설물 등은 현재 대지경계에 설치된 각종 지장물(담장, 석축, 조경, 경계석, 펜스)에 의해서 일부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과 북서측 용구대로 2360번길과 연결되는 보행자 동선(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2개소)이 설치됩니다.</li> <li>• 본 단지의 지하층은 지하1~2층 주민공동시설, 지하2~3층은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본 단지 주차계획은 지상1층에는 남측출입구 인근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과 비상차량 동선만 계획되어있고, 아파트 주차공간은 지하2층에서 지하3층까지 1,287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상 1층에 근린생활시설 후면에 5대 및 조업주차가 설치되고, 단지계획의 특성상 아파트 문주, 차량 주출입구 및 단지 내 지상1층 일부 도로를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입점자, 근린생활시설 이용자, 쓰레기수거차량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구획은 불가함을 수인-동의합니다.</li> <li>• 소방법에 의한 비상차량동선 및 접근로는 시공 및 소방 준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 및 정차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쓰레기차량, 응급차량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비상차로는 입주 후 진출입부(보행자출입구)에 이동식 볼라드 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소방차 및 기타 서비스 차량의 이용 시, 별도의 출입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 실 시공 시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공용부 창호의 실시 위치, 개소, 사양은 변경될 수 있다.</li> <li>•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 하수, 우수, 도시가스, 전기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 내부창호 포함)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li> <li>• 본 단지 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으로 적용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의거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바닥면적은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li> <li>• 본 단지는 범죄예방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li> <li>• 단지 내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DA, 환풍, 타이라이트 등)이 지상에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수량, 디자인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과 인접한 일부 세대에 소음, 분</li> </ul>

진, 냄새, 진동, 빛반사 등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시공시 위치 및 크기, 형태 등이 변경 될수 있습니다.)

- 테라스타입 복합주동인 (107동/112동, 108동/111동, 104동/110동)은 2개동(저층테라스동+상부일반주동)이 수직으로 결합된 복합 주동 형태로 한 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별도의 주동으로 표현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를 이용하여 단지배치상 지상 1층 및 지반층 각 동 코어 내 승강기를 이용해 이삿짐을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어기고 사다리차량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실내 개방감 확보를 위해 입면 창호에 접합유리난간으로 설치되며 과도한 충격 시 접합유리난간이 파손되거나 프레임이 훼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키볼출(잔금처리)) 이후 훼손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에는 이삿짐 차량 및 대형차량(1.5톤 초과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함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공사의 특성 상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주요 구조부 및 각 세대 내에 자체 반입 등을 위한 임시 개구부를 공사 기간 중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각동별 지반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 소방차 비상차로 및 정차구간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여 저층세대의 식재 및 차폐시설의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104/110동과, 107/112동, 108/111동 후면하부에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 중 선근위치는 스틸 그레이팅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이는 소방법에 의한 사항으로 미관상의 이유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반층 주동 하부 및 인근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위치와 대수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동별, 호수별 위치에 따라 동선 및 거리 등은 차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반층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소가 각 주동 인근에 8개소(근린생활시설 포함)가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주동은 배치 여건에 따라 다른 주동과 함께 사용 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수량 및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동별, 호수별 위치에 따라 동선 및 거리 등은 차이가 있음)
- 단지 내에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관할구청에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체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소와 인접한 세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에 101동, 102동 전면 사이에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소는 근린생활시설 전용으로 아파트 입주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104/110동과 109동 사이 및 103동 하부공간에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사우나,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키즈카페, 북카페, 연회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계획 되어 있고 101동과 106동 사이 지상1층에는 주민공동시설(게스트하우스)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 세대는 시각적 간섭, 소음, 냄새, 진동 등 생활상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104/110동 4호 라인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의 냉난방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 생활상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지반층 외부공간에는 어린이놀이터, 산수정원, 유아놀이터, 단지내 산책로, 비상차량동선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이와 인접 세대는 시각적 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상 불편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102동, 103동 사이에 문주 및 지하주차장 진출입로와 드롭존, 103동 전면에 있는 승하차 대기공간 등의 상부 구조물, 실외기 등 각종 설비 장비로 인해 일부 중저층 세대의 소음, 빛공해, 조망, 일조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오수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수지레스피아) 증설이 완료될 때까지(2027년말 예정) 단지 내 101동 서측 지하에 설치되는 오수저류(집수)시설을 통하여 06:00부터 01:00까지 집수 후 01:00부터 05:00까지 공공하수 유입처리 처리될 예정이며, 하수종말처리장(수지레스피아) 증설 완료 후 당해 오수집수시설은 물 재이용시설(빗물저류조)로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 ※ 하수종말처리장(수지레스피아) 증설 완료일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오수집수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은 용인시에 제출된 하수처리계획서에 따라 운영 조건을 이행될 예정이며 「공동주택관리법」제11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입주자 등에게 이관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운영할 계획이며 관리주체가 변경된 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입주자 등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함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오수집수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단지 인허가 조건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오수집수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처리 방안

구분	오수집수시설 설치공사	오수집수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주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후 사용할 자연구배식 오수관로 선반영 공사 및 오수집수시설 재활용(빗물저류조)공사
비용부담	사업시행자 (엠디엠)	입주자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엠디엠)

- 물 재이용시설(빗물저류조)로 재활용할 시에는 관리주체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물재이용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용인시 하수행정과 물재이용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단, 오수집수시설의 물 재이용시설(빗물저류조) 변경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사항 및 공사 일체의 금액(저류조 및 관리실 변경, 연결관로 해체 등 변경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은 사업시행자(위탁자:엠디엠(주))가 부담하며, 시설 운영에 관련된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합니다.
- 본 단지에 설치되는 오수저류조에는 악취저감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나, 인근 세대는 악취, 진동, 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주동 측벽(5호라인)에 오수저류조 환기를 위한 벤트 설치용 샤프트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부여된 용구대로 및 구성로 증설 및 개선 공사 내용은 관련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계획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p>주 동 계 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른 구성로(중1-74호선 차선 일부 추가 확장) 추가개선공사는 별도의 인허가 사항이므로 본 단지 사용승인 전 공사완료가 불가 할 수 있으며, 입주 후 교통 체증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각 주동 엘리베이터 대수 및 속도는 동의 조합형태 및 층수에 따라 다르게 설치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아파트 각동은 코어당 각각 1호, 2호, 3호의 세대 조합으로 구성되어 각 세대들을 연결하며, 아파트 각 세대의 위치에 따라 세대 출입구와 코어와의 거리 차이가 있음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및 인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부 주동 세대는 외코어로 계획되어 있지만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각 동 공용부(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의 채광, 환기 창호는 주거동의 조합 형태에 따라 각 동별, 층별로 위치, 크기 창호 열림(개폐)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li> <li>• 지하주차장 및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별 출입문 및 공용 홀 및 복도는 각 동별로 구조적 조건이 상이하여 크기, 구조,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테라스세대는 단지 레벨차를 이용한 테라스특화 평면으로 전면부는 테라스로 계획되어 있으며 후면부는 PIT공간 및 선콘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어 채광, 환기가 가능하나 시각적 간섭, 소음 등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테라스세대 후면부의 PIT 및 선콘공간은 공용공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추후 유지, 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 및 관리자가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각 주동 및 문주 입면, 근린생활시설 입면에 브랜드용 건물명칭, 사인, 조명 등이 설치 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시각적 간섭, 눈부심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필로티 테라스세대 상부 및 동출입구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해 캐노피 및 동출구구조물이 설치 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구조물에 의해 우천시 낙수소음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지상1층에 설치 예정인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위치 및 디자인 등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li> <li>• 주동 저층부 마감재인 페인트, 석재, 테라코타 등의 외부마감재 및 물당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지붕 등 옥외 난간은 건축법 등 높이기준에 따라 콘크리트난간 투시형 난간 등으로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동 입면에는 빗물배수를 위한 선홍통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세대 내부로 우수배관이 지나갈 수 있고 배관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동별 외벽에 환기 장치 및 세대 화장실, 주방 직배기 관련 외부마감캡 설치가 되며 위치 및 크기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주동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옥상 구조물 설치로 인한 기둥이 옥상에 내 추가 설치 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옥상 구조물의 형태, 재질,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부 대 복 리 시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등의 운영방안 및 관리는 입주 후 입주자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위치하고, 단지 내 대지의 레벨차를 활용한 계획으로 표기상 지하층이지만 외기에 면해 있어 채광 및 통풍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등 일부 주민공동시설 제외)</li> <li>• 단지 내 게스트 하우스(주민공동시설)는 객실 및 각 객실에서 이용 가능한 테라스가 4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사우나, 수영장,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당구장, 북카페, 독서실, 키즈카페, 연회장, 어린이집, 경로당, 게스트 하우스 등)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시공 시 현장여건 및 행정상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시설의 배치, 형태, 내부구조, 면적, 건축계획과 마감재 등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에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는 단지 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li> <li>•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을 위해 추후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주요내용 : 시설 무상임대, 거주자 자녀의 우선입소비용을 어린이집 정원의 30~70% 범위 내에서 설정 등)을 관할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국공립어린이집의 내부시설물, 비품, 인테리어 등은 인·허가 및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경우 장기 무상임대에 따라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설치될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공공개방시설로서 단지 입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과 함께 이용해야하며, 단지내 어린이집의 인근주민 이용을 위해 해당시설 및 접근동선 등은 외부인에게 개방하여야 합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 등의 사양은 각 시설의 기능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입주민들은 설치되는 각종 기구류의 사양 등에 대한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이동식가구, 기구, 비품류, 집기류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지급 품목이 아니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합니다.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에 포함된 가구 및 기구의 각종비품 집기류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임.)</li> <li>• 주민공동시설의 위치 및 접근동선은 각 동별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중 연회장은 총 4실로 구성되며 통합 운영 할 수 있게 가변적으로 계획 될 예정입니다. 필요시 간단한 취사가 가능하도록 공동주방이 설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시설 및 세대에 소음 및 냄새로 인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입주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li> <li>•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사우나 시설은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인 대상으로 영입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시스템 구성 및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li> </ul>

지하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대시설의 선근 구역에는 사우나 시스템 가동을 위한 설비(실외기 등), 부대복리시설 및 사우나 환기용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본 단지 총 주차대수는 1,292대(아파트+근린생활시설)이며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전용 주차장(1,287대)으로 지하2층(639대), 지하3층(648대)으로 계획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은 지상 1층(5대)에 별도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제한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각 시설물 사용자 및 입점자는 타용도의 주차장 사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2개층으로 구성되며 행정 표기상 레벨에 따라 지하2층, 지하3층으로 표현 및 계획 될 예정이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li> <li>지하주차장 주행로 유효높이는 약2.3m(지하2층 주행로 유효높이 진입높이 : 약2.7m 택배차량 진입 가능), 주차면은 약2.1m으로 설치되므로 해당 높이 초과차량은 이동에 제약이 있으며 유효 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li> <li>지하주차장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li> <li>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여성우선주차, 경차주차, 전기자동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용도별 주차계획은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1CH) 2대, 완속(2CH) 15대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수량과 동·층별 배분계획,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관련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각종 기계설비 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은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에 노출시공됩니다.</li> <li>일부 주동 하부 지하층에, 기계실(펌프실), 열교환실, 전기실, 발전기실, 주차헬름, 제연헬름 등이 설치되며, 장비등의 운용에 의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li> <li>지하 주차장 내 기둥 간격 및 위치가 일정하지 않으며,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 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각동별 지하층 동출입구 위치에 따라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계획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무인택배 시스템은 세대수의 약 20%가 지하주차장내 동별 설치됩니다. (냉동, 냉장함 제외)</li> <li>무인택배 시스템은 관리사무소 내부서버로 운영됩니다. 향후 원격관리 시스템(관제센터 통화, 문자발송, 카드결제 등)으로 운영할 경우 입주자 부담으로 서비스 비용 및 기간사업자로부터 고정IP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li> <li>단지 내 지상·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li> <li>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은 주변과의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또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li> <li>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li> <li>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 외벽과 주차구획의 이격으로 인해 일부 주차통로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각 동별 인근에 설치되는 세대 창고의 수량 및 위치, 형태 등은 각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세대창고의 운영방안 및 관리는 입주 후 관리주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li> <li>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전용 및 공용화하여 사용 할 수 없고 또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ul>
단위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한 타입이라도 계약 세대가 속한 동·층·향별 차이로 일조권,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li> <li>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주택전시관과 달리 동호수에 따라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li> <li>세대 타입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li>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면한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1층, 2층, 최상층 세대의 실내에는 동계감지기가 설치되며, 배터리 교환 주기는 통상 1년으로 사용 요건에 따라 교환 주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동하부 필로티 인근 저층세대는 필로티 내 시설의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 등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바닥에 단열재가 시공이 되나 외기에 직면하므로 기준층 세대에 비해 바닥난방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li> <li>최상층 세대는 상부 슬래브가 외기에 직면하므로 단열재의 두께 및 위치가 기준층세대와 다르게 시공되며, 이에 따라 난방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li> <li>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기본 2.35m(거실 우물천장 2.48m)이며 본 공사시 세대내 천장높이는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각 세대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침실 내 도어 후면 및 벽체 등에 설치 될 예정입니다. (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li> <li>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세대내 다용도실, 욕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실외기실 등의 단차는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세대 난방은 온수 바닥 난방이고 냉방은 천장형 에어컨이며 실제 시공 시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에어컨과는 모양 및 크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세대 내 천장형 에어컨은 무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설치위치, 수량 및 용량 등은 주택형별로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li> <li>59전 타입 및 74타입의 주방, 84A,D타입의 알파룸에는 별도로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공사 및 변경 등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li> <li>테라스는 층별, 타입별 테라스의 위치 및 면적, 형태가 서로 상이하며 세대별 대지지분 및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소유의 면적으로 공부상에 등재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테라스타입의 테라스는 설계계획상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에서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한 관리자의 진입 요구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li> <li>테라스 세대 구조상 전유부(소유부)가 아닌 타 세대의 지붕층 등을 테라스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일체의 구조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및 마감재 변경, 추가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본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며 관계법령에 따른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본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물을 수 없습니다.</li> <li>구조상 전용화하여 사용하는 테라스 공간의 유지/보수/관리 및 테라스에 설치되는 조명 및 수전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요금은 해당 세대의 계약자(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테라스 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층 세대에서 일부 보일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테라스 세대와 인접한 중저층세대에는 소음,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li> </ul>

- 테라스에 면하는 외부 창호에는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테라스 외곽에 난간이 설치됩니다.
- 테라스 공간에 사생활침해, 보완상 이유로 경계벽, 난간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테라스 바닥 마감은 타일로 마감되며 우수드레인이 노출시공 됩니다.
- 테라스 진출입시 실내외부의 단 차이 및 빗물침투방지를 위한 창문의 턱에 발이 걸리거나 부주의에 의한 낙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10동, 111동, 112동의 84A, 84C 2층 세대의 욕실1에는 층상배관이 적용되며 하자 발생시 욕실 바닥 철거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층상배관이 적용된 욕실1의 경우 세면대 선반 폭(130mm->200mm)증가, 세면대 선반 높이(900mm->1,000mm)증가 및 욕실 상부장 높이가 50mm축소 됨으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1동 103,104호 / 112동 103,104호는 윗층 테라스세대의 발코니 및 실외기실 배수배관이 침실1 천정을 통과 함으로 약간의 배수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안방에 비확장 발코니가 있는 단위세대는 발코니에 오수 및 우수관이 노출시공 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현관 중문 및 84A, D타입 알파룸 슬라이딩 도어는 무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자재 품질,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내 등기구 위치 및 사양, 디자인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내 적용될 가전기기의 모델사양은 제조회사의 사정에 의해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적용될 시스템가구의 제조회사, 디자인, 시공디테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냉장고, 김치냉장고 설치공간은 계약자가 소유한 제품크기에 따라 설치시 돌출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가구 및 불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주택전시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 등은 천장내부의 설비배관 및 덕트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등 설치 유무,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가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2가 설치되는 세대의 샤워부스는 접합유리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디자인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TV, 욕실1 욕실폰, 가구콘센트 및 스위치 등의 위치와 사양은 본 공사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로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시 성능 개선등의 사유로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주방, 침실의 콘센트 중 일부는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됩니다.
- 세대 내 현관 인근에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되며, 일괄소등 스위치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벽체에는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 등의 각종 기계전기설비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므로(보통 수직 형상) 못질 또는 브라켓 고정시 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며 벽체 및 배관 파손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를 위한 고정IP는 준공후 4개월간 무상제공되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간사업자로부터 고정IP를 유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 세대 내부 벽체 중 일부는 경량벽체로 시공되며,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욕실 및 다용도실과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점검구(유지보수)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슴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의 생활환경 및 주기적인 실내환기가 부족할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 최하층 필로티 상부세대는 완강기가 설치되며, 실외기실 루버는 비상시 탈출이 가능 하도록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시공 됩니다
- 본 단지는 '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하여 아래층으로 탈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필로티 최하층 필로티 상부세대 및 테라스 2층 세대(110동, 111동)는 완강기가 병행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 및 공간 사용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주방가구 및 욕조 하부, 샤워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 설치공간(하향식 피난구), 다용도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침실 등 도어에는 손끼임방지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의 자재특성상(은 성분)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합니다.
- 단위세대 타입별로 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및 하향식피난구 위치, 구조 및 크기가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알루미눔슬라이딩 도어는 제품 특성상 문짝과 벽체 사이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방음, 기밀성능이 없는 제품입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알루미눔슬라이딩 도어는 본공사 시 제조회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타일, 인조석재 등의 자재는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주방가구 상판의 인조석재 마감은 마감재 특성상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거실 아트월, 발코니 등에 사용된 인조석재 및 타일, 등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나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불박이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빌트인가전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에 설치된 아일랜드장은 위치를 옮길 경우 전기 배관 및 전선이 바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 도장으로 마감되는 부위의 벽체하부에 오염방지 도장이 시공되며, 도장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부 창호 디자인, 난간, 프레임 개수 및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크기, 개폐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별, 층별,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 실외기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가동시 인접한 실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 있습니다.</li> <li>•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배수 선홍통, 선홍통BOX가 설치되며 수량,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li> <li>•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에는 개폐형 방충망이 설치되며, 실제 시공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사용상 간섭을 줄이기 위해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짝수층과 홀수층 위치가 교차되어 설치되며, 본 공사시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제조사,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하향식 피난공간에는 어떠한 물품도 적재 및 보관할 수 없고, 비상 시 아래층 전유공간 이용 및 관련법에 따라 문 등에 잠금장치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물질적, 금전적인 책임 등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하향식피난공간 및 하향식피난구는 비상 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상 하향식피난공간 출입문은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단위세대 중 실외기실/하향식피난공간 천장에 설치되는 환기장비는 하향식 피난사다리의 위치에 따라 세대별로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본 공사시 덕트가 노출되어 시공됩니다.</li> <li>• 본 공사시 단위세대 타입에 따라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하향식피난공간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설치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다용도실에 설치된 벽 선반(접이식)은 세탁기의 크기에 따라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반간섭 시 선반을 접어서 세탁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공사시 다용도실내 세탁수전, 세탁선반, 배수구 등의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에어컨 실외기실내 입상배관 및 배수구 등의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하향식 피난공간에 벽부형 비상조명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설치위치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 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 및 공급 될 예정입니다</li> <li>• 단위세대의 주방을 제외한 외부창호에는 일체형 유리난간이 설치되어 환기량이 일반적인 창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외부 창호의 손잡이는 추후 본 시공 시 사용성 및 미관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기 계 전 기 설 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난방 및 온수는 지역열원을 활용한 방식으로 세대 내 개별 보일러실 공간은 계획 되지 않습니다.</li> <li>•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에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의 시설물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li> <li>•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세대난방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난방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난방분배기가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 본공사시 욕실 상부 천장 내부공간에 상부 세대 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누수 등 유지관리 필요시 관리주체에 협조해야 합니다.)</li> <li>• 최상층 일부 세대는 욕실 천정으로 욕실 우수 배관이 통과 되며, 우천시 다소의 낙수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공사시 세대 욕조는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환기장치 등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방송 시설물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에는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패드가 설치되고,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설치를 위한 부지를 단지 내에 제공하며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는 계약자(입주자)에게 있습니다.</li> <li>•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영구배수 설비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공용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될 예정입니다.</li> <li>• 실외기실/하향식피난공간 및 다용도실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일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의거 아파트 단위세대 내 가스배관은 인입되어 있으나, 가스 관련 설비가 설치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추후 가스사용과 관련된 공사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하부장 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위해 각 동에 피뢰 설비용 수뢰부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수뢰부가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보호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피뢰침, 축리피뢰침 및 기타 기기)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및 기타 민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li> <li>• 계약자(입주자)가 임의로 냉·난방 공급설비의 용량 증설이 불가합니다.</li> <li>• 천장형 에어컨은 무선리모콘 작동 방식으로 별도의 벽부형 스위치가 설치되지 않습니다.(실내기 1대당 1개)</li> <li>• 환기장비 필터는 연 1~2회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필터구입 및 교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li> <li>• 공동주택 전열교환기의 스위치는 실외기실, 다용도실 벽면 등에 유선 스위치 형태로 설치되며, 세대 내 월패드를 통해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li> <li>• 각 세대 주방, 욕실의 환기설비는 직배기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소음, 냄새 등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벽에 배기구가 설치되어 입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li> </ul>

- 옥실배관에 대한 상세설계는 현장여건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한 설비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회선 설치 및 이용을 위한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에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아울러 자동식 소화기 조작부가 설치되는 부분은 상부장d의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방후드 주변 천장에 점검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설치공간 및 발코니 수전,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는 부분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원 가입 및 동의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 홈 서비스는 무상 제공이 원칙이나 당 사의 정책에 의해 일부 유상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세대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스마트홈 서비스관련 삼성, 애플 및 기타 기기의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연동 및 기타)도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주택형별 세대내에 설치된 콘센트는 법적 설치기준에 의거 일부 콘센트의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제공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위치, 개소 변경 및 운영에 의해 생기는 어떠한 문제 에 대해서도 시공사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중계기는 101동, 103동, 104동, 106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수량 및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계장치는 지하층 동전기실 및 PIT에 설치 될 예정입니다.
- 이동통신설비(중계장치)는 옥상층(101동, 103동, 104동, 106동)과 지하층(101동, 103동, 108동)에 설치될 예정이며, 수량 및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안테나(이동통신안테나, 공정안테나, 위성안테나 등)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고 수량 및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축	소방/정보통신	전기	비고
회사명	주식회사 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한림건축CM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진광엔지니어링	-
감리금액	3,426,423,000	462,000,000	546,264,400	-

■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엠디엠(시행위탁자)이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시행위탁자인 (주)엠디엠이고, 한국자산신탁(주)는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아래 ‘관리형토지신탁’에 관한 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인 (주)엠디엠,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 그리고 시공사인 디엘이앤씨(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한국자산신탁(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시행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시행위탁자 (주)엠디엠 및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입니다. 본 공급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모든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은 관계법령에 의거 **시행위탁자인 (주)엠디엠 및 시공사인 디엘이앤씨(주)가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준공전·후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한국자산신탁(주)가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매수인에 대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엠디엠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고, 공급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시행위탁자겸 수익자 (주)엠디엠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대금 반환, 입주지연시 지체상금, 매도자의 하자책임, 소유권 이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엠디엠이 부담합니다.
- 한국자산신탁(주)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우선수익자 지급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불가피 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자산신탁(주)에게는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은 (주)엠디엠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합니다.

■ 내진 성능 및 능력 공개 -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

- 내진 등급 : 1등급, 내진설계 능력 MMI진도 : VII / 설계지반최대가속도 : 0.239g입니다

■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타워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70012
- 사업방식 : 관리형 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시 개별등기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사	시공사
상 호	한국자산신탁(주)	(주)엠디엠	디엘이앤씨(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역삼동, 카이트타워)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34 D타워 돈의문
법인등록번호	110111-2196304	110111-1537385	110111-7736808

※ 연대보증인 : 디엘이앤씨(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7736808), 디엘건설(주) (법인등록번호 : 110111-0163115)

■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홈페이지 : <http://www.elife.co.kr>

■ 주택전시관 :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901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기재사항의 오류 및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4.20.(목요일)	
특별공급 청약신청	2023.05.02.(화요일)	
일반공급 청약신청	1순위	2023.05.03.(수요일)
	2순위	2023.05.04.(목요일)
당첨자발표일	2023.05.11.(목요일)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예비입주자는 추후 별도 안내)	2023.05.13.(토요일) ~ 2023.05.20.(토요일) 8일간	
당첨자 계약체결기간	2023.05.22.(월요일) ~ 2023.05.24.(수요일) 3일간	
공급세대수	총 999세대 (특별공급 514세대 / 일반공급 485세대 ) [ 59A 105세대, 59B 21세대, 59C 3세대, 74 152세대, 84A 461세대, 84B 97세대, 84C 135세대, 84D 21세대, 84E 2세대, 84F 2세대 ]	

<http://www.elife.co.kr>

대표번호

1533-3442

시행위탁사 : (주)엠디엠 / 시행수탁사 : 한국자산신탁(주) / 시공사 : 디엘이앤씨(주)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